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700호 2021. 9. 6.(월)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1-128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1
남해군 고시 제2021-130호 지적기준점(도근점)성과 폐기 고시	5
남해군 고시 제2021-132호 남해군관리계획(독일마을·원예예술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19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1-1172호 2021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공고	31
남해군 공고 제2021-1175호 2021년도 전입세대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37	37
남해군 공고 제2021-1176호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7
남해군 공고 제2021-1180호 남해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62
남해군 공고 제2021-1184호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73
남해군 공고 제2021-1188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	77
남해군 공고 제2021-1210호 상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	78
남해군 공고 제2021-1211호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공고	85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성과담당관(860-3045, 행정 3045)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1 - 128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6일

남 해 군 수

- 측량성과 고시현황
- 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 87점
- 측량성과고시 내용 : 붙임 참조

지적기준점 측량성과(도근점) 고시내역

연번	기준점명칭	점명	원점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1	16060	도근점	중부	245562.512	77.541	127° 52' 8.04"	34° 48' 10.1005"	2021.07.30	서면 대정리 213-8	철재	남해군청	
2	16061	도근점	중부	245697.916	69.654	127° 52' 5.7989"	34° 48' 14.5103"	2021.07.30	서면 대정리 203	철재	남해군청	
3	16062	도근점	중부	245616.133	64.561	127° 52' 1.7713"	34° 48' 11.8852"	2021.07.30	서면 대정리 175-4	철재	남해군청	
4	18120	도근점	중부	260062.899	115.811	127° 54' 35.1685"	34° 55' 59.5495"	2021.07.30	실천면 문의리 355	철재	남해군청	
5	18121	도근점	중부	260014.704	111.671	127° 54' 35.0169"	34° 55' 57.9868"	2021.07.30	실천면 문의리 356-3	철재	남해군청	
6	18122	도근점	중부	259836.759	92.691	127° 54' 35.6267"	34° 55' 52.2081"	2021.07.30	실천면 문의리 432-1	철재	남해군청	
7	18023	도근점	중부	259455.921	30.915	127° 52' 37.5869"	34° 55' 40.7185"	2021.08.05	실천면 덕신리 668-4	철재	남해군청	
8	18024	도근점	중부	259272.233	49.337	127° 52' 40.2495"	34° 55' 34.7388"	2021.08.05	실천면 덕신리 774	철재	남해군청	
9	18025	도근점	중부	259064.666	81.571	127° 52' 39.5734"	34° 55' 28.0084"	2021.08.05	실천면 덕신리 819-1	철재	남해군청	
10	18026	도근점	중부	259047.295	83.556	127° 52' 40.9404"	34° 55' 27.4348"	2021.08.05	실천면 덕신리 827	철재	남해군청	
11	18027	도근점	중부	258956.583	96.874	127° 52' 42.0657"	34° 55' 24.4832"	2021.08.05	실천면 덕신리 833	철재	남해군청	
12	19256	도근점	중부	258442.065	2.771	128° 00' 33.7973"	34° 55' 4.1234"	2021.08.05	창선면 대버리 579-4	철재	남해군청	
13	19257	도근점	중부	258488.131	2.91	128° 00' 37.5257"	34° 55' 5.5871"	2021.08.05	창선면 대버리 577-1	철재	남해군청	
14	19258	도근점	중부	258540.221	2.667	128° 00' 42.5896"	34° 55' 7.2352"	2021.08.05	창선면 대버리 557-6	철재	남해군청	
15	19259	도근점	중부	258584.884	2.593	128° 00' 45.0806"	34° 55' 8.6637"	2021.08.05	창선면 대버리 557-8	철재	남해군청	
16	19260	도근점	중부	258580.362	2.682	128° 00' 50.3618"	34° 55' 9.4730"	2021.08.05	창선면 대버리 521	철재	남해군청	
17	19261	도근점	중부	258632.436	2.844	128° 00' 54.5071"	34° 55' 10.1281"	2021.08.05	창선면 대버리 469-3	철재	남해군청	
18	19262	도근점	중부	258712.398	2.577	128° 00' 59.3575"	34° 55' 12.6822"	2021.08.05	창선면 대버리 469-3	철재	남해군청	
19	19263	도근점	중부	249550.446	13.618	127° 59' 27.0973"	34° 50' 16.1503"	2021.08.05	창선면 대버리 469-3	철재	남해군청	
20	19264	도근점	중부	254743.289	23.134	128° 00' 43.1167"	34° 53' 4.0258"	2021.08.05	창선면 지족리 357-1	철재	남해군청	
21	19265	도근점	중부	254889.981	25.037	128° 00' 43.4152"	34° 53' 8.7833"	2021.08.05	창선면 동대리 1026	철재	남해군청	
22	19266	도근점	중부	255038.912	28.269	128° 00' 44.2851"	34° 53' 13.6087"	2021.08.05	창선면 동대리 1025	철재	남해군청	
23	19267	도근점	중부	255155.18	27.601	128° 00' 44.0553"	34° 53' 17.3833"	2021.08.05	창선면 동대리 1025	철재	남해군청	
24	19268	도근점	중부	255265.808	27.609	128° 00' 43.8490"	34° 53' 20.9748"	2021.08.05	창선면 동대리 1025	철재	남해군청	
25	19269	도근점	중부	255411.706	29.636	128° 00' 43.9349"	34° 53' 25.7083"	2021.08.05	창선면 동대리 1025	철재	남해군청	
26	19270	도근점	중부	255542.616	27.203	128° 00' 43.7334"	34° 53' 29.9578"	2021.08.05	창선면 당항리 산127-1	철재	남해군청	
27	19271	도근점	중부	254924.147	33.84	128° 00' 40.5194"	34° 53' 9.9161"	2021.08.05	창선면 동대리 1026	철재	남해군청	
28	19272	도근점	중부	253962.96	40.053	127° 58' 27.4998"	34° 52' 39.8131"	2021.08.10	창선면 서대리 1065-7	철재	남해군청	
29	19273	도근점	중부	253988.335	35.798	127° 58' 27.2841"	34° 52' 40.6382"	2021.08.10	창선면 서대리 1065-7	철재	남해군청	
30	19274	도근점	중부	254001.042	25.464	127° 58' 29.7457"	34° 52' 41.0308"	2021.08.10	창선면 서대리 1065-1	철재	남해군청	
31	19275	도근점	중부	254041.739	17.252	127° 58' 30.2277"	34° 52' 42.3475"	2021.08.10	창선면 서대리 산198-1	철재	남해군청	
32	19276	도근점	중부	254034.131	17.693	127° 58' 33.6783"	34° 52' 42.0729"	2021.08.10	창선면 서대리 산196-1	철재	남해군청	
33	15120	도근점	중부	236967.514	67.949	127° 53' 36.8667"	34° 43' 30.5524"	2021.08.13	남면 흥현리 807-4	철재	남해군청	
34	15121	도근점	중부	237014.937	72.9	127° 53' 35.7645"	34° 43' 32.0993"	2021.08.13	남면 흥현리 산312-11	철재	남해군청	
35	15122	도근점	중부	237198.464	76.953	127° 53' 33.3137"	34° 43' 38.0727"	2021.08.13	남면 흥현리 826-13	철재	남해군청	
36	13220	도근점	중부	247530.453	4.488	127° 58' 51.6674"	34° 49' 10.8906"	2021.08.17	삼동면 영지리 816	철재	남해군청	

37	13221	도근점	중부	247587.78	289948.662	7.953	127°58'55.4552"	34°48'12.7203"	2021.08.17	삼동면 영지리 1561-3	철재	남해군정
38	13222	도근점	중부	247607.679	289997.096	9.481	127°58'57.3685"	34°48'13.3505"	2021.08.17	삼동면 영지리 1605-1	철재	남해군정
39	13223	도근점	중부	247606.675	289924.937	9.879	127°58'58.4635"	34°48'13.3091"	2021.08.17	삼동면 영지리 3083	철재	남해군정
40	13224	도근점	중부	247500.988	289947.74	14.444	127°58'59.3198"	34°48'59.8727"	2021.08.17	삼동면 영지리 3083	철재	남해군정
41	13225	도근점	중부	247465.493	289997.384	19.014	127°59'1.2594"	34°48'7.7053"	2021.08.17	삼동면 영지리 3083	각인	남해군정
42	13226	도근점	중부	248404.786	292361.369	14.366	128°00'34.6378"	34°48'38.4194"	2021.08.17	삼동면 금송리 1361	각인	남해군정
43	13227	도근점	중부	248452.131	292395.387	10.321	128°00'35.9951"	34°48'39.9445"	2021.08.17	삼동면 금송리 1355-1	각인	남해군정
44	13228	도근점	중부	248538.912	292398.047	4.333	128°00'36.1341"	34°48'42.7592"	2021.08.17	삼동면 금송리 1342-30	철재	남해군정
45	13229	도근점	중부	248546.328	292587.427	6.022	128°00'43.5887"	34°48'42.9380"	2021.08.17	삼동면 금송리 685-3	철재	남해군정
46	13230	도근점	중부	248566.122	292315.349	3.583	128°00'32.8909"	34°48'43.6691"	2021.08.17	삼동면 금송리 1396-2	철재	남해군정
47	13231	도근점	중부	248616.184	292247.345	3.415	128°00'30.2349"	34°48'45.3156"	2021.08.17	삼동면 금송리 662	철재	남해군정
48	13232	도근점	중부	248666.406	292114.493	3.175	128°00'25.0273"	34°48'46.9884"	2021.08.17	삼동면 금송리 1410-6	철재	남해군정
49	13233	도근점	중부	246306.372	294676.838	12.271	128°02'4.8926"	34°48'29.5698"	2021.08.17	삼동면 동진리 2042-27	철재	남해군정
50	13234	도근점	중부	246151.463	294643.174	14.046	128°02'3.5055"	34°48'24.5550"	2021.08.17	삼동면 동진리 1017-7	철재	남해군정
51	13235	도근점	중부	246154.608	294731.533	20.201	128°02'6.9825"	34°48'24.6274"	2021.08.17	삼동면 동진리 1011-2	철재	남해군정
52	19277	도근점	중부	258233.486	292777.705	27.903	128°00'54.9377"	34°54'57.1791"	2021.08.19	창선면 대브리 345-3	철재	남해군정
53	19278	도근점	중부	258256.971	292750.298	27.09	128°00'53.8676"	34°54'57.9502"	2021.08.19	창선면 대브리 345-3	철재	남해군정
54	19279	도근점	중부	258278.138	292744.73	22.665	128°00'53.6567"	34°54'58.6387"	2021.08.19	창선면 대브리 343-2	철재	남해군정
55	19280	도근점	중부	258389.387	292826.834	19.221	128°00'56.9352"	34°55'2.2212"	2021.08.19	창선면 대브리 1078	철재	남해군정
56	19281	도근점	중부	253737.044	290289.398	38.688	127°59'15.1784"	34°52'32.0976"	2021.08.19	창선면 대브리 1265	철재	남해군정
57	19282	도근점	중부	253773.305	290202.199	33.707	127°59'11.7595"	34°52'33.3020"	2021.08.19	창선면 서대리 246-1	철재	남해군정
58	19283	도근점	중부	253819.939	290075.135	28.346	127°59'6.7749"	34°52'34.8557"	2021.08.19	창선면 서대리 293-1	철재	남해군정
59	19284	도근점	중부	253844.417	290010.079	26.409	127°59'4.2231"	34°52'35.6706"	2021.08.19	창선면 서대리 853-1	철재	남해군정
60	19285	도근점	중부	251257.13	291187.289	51.602	127°59'49.5571"	34°51'11.3468"	2021.08.19	창선면 옥전리 8	철재	남해군정
61	19286	도근점	중부	251669.047	290940.791	87.409	127°59'40.0160"	34°51'24.7912"	2021.08.19	창선면 옥전리 1125	철재	남해군정
62	19287	도근점	중부	251745.672	290959.99	86.696	127°59'40.8016"	34°51'27.2711"	2021.08.19	창선면 옥전리 881	철재	남해군정
63	19288	도근점	중부	251821.71	290911.036	87.177	127°59'38.9044"	34°51'29.7540"	2021.08.19	창선면 옥전리 841-2	철재	남해군정
64	19289	도근점	중부	253807.084	293899.975	6.965	128°01'37.3547"	34°52'33.1924"	2021.08.19	창선면 가인리 705-4	철재	남해군정
65	19290	도근점	중부	253730.905	293934.053	12.098	128°01'38.6655"	34°52'30.7094"	2021.08.19	창선면 가인리 697	철재	남해군정
66	19291	도근점	중부	253684.006	294013.85	21.263	128°01'41.7881"	34°52'29.1612"	2021.08.19	창선면 가인리 산186-4	철재	남해군정
67	19292	도근점	중부	253651.414	294037.039	30.161	128°01'42.6879"	34°52'28.0960"	2021.08.19	창선면 가인리 산186-4	철재	남해군정
68	19293	도근점	중부	254454.392	294443.091	123.14	128°01'58.9998"	34°52'54.0132"	2021.08.19	창선면 가인리 산160-18	pvc	남해군정
69	19294	도근점	중부	254423.039	294420.895	115.156	128°01'58.1131"	34°52'53.0034"	2021.08.19	창선면 가인리 산160-8	pvc	남해군정
70	19295	도근점	중부	254447.926	294380.88	108.886	128°01'56.5478"	34°52'53.8243"	2021.08.19	창선면 가인리 산160-8	pvc	남해군정
71	13210	도근점	중부	248881.61	291463.732	6.937	127°59'59.5055"	34°49'54.1821"	2021.08.04	삼동면 지족리 281-10	철재	남해군정
72	13211	도근점	중부	248786.991	291458.691	6.33	127°59'59.2700"	34°49'51.1137"	2021.08.04	삼동면 지족리 297-2	철재	남해군정
73	13212	도근점	중부	248688.938	291443.125	6.93	127°59'58.6191"	34°49'47.9373"	2021.08.04	삼동면 지족리 388-3	철재	남해군정
74	13213	도근점	중부	248704.342	291483.57	6.773	128°00'0.2165"	34°49'48.4240"	2021.08.04	삼동면 지족리 409-4	철재	남해군정
75	13214	도근점	중부	248652.592	291499.676	8.388	128°00'0.8300"	34°49'46.7398"	2021.08.04	삼동면 지족리 409-4	철재	남해군정
76	13215	도근점	중부	248628.914	291595.279	9.967	128°00'4.5825"	34°49'45.9406"	2021.08.04	삼동면 지족리 170-1	철재	남해군정

77	13216	도근점	중부	248662.455	291718.417	9.295	128°00'9.4409"	34°49'46.9889"	2021.08.04	삼동면 지족리 170-1	철재	남해군정
78	13217	도근점	중부	248687.057	291811.685	5.876	128°00'13.1205"	34°49'47.7569"	2021.08.04	삼동면 지족리 183-3	철재	남해군정
79	13218	도근점	중부	248720.213	291884.609	4.018	128°00'16.0030"	34°49'48.8090"	2021.08.04	삼동면 지족리 183-3	철재	남해군정
80	13219	도근점	중부	248682.588	292006.227	3.573	128°00'20.7736"	34°49'47.5487"	2021.08.04	삼동면 금송리 1413-2	철재	남해군정
81	12054	도근점	중부	236648.498	290776.737	13.159	127° 59' 27.7233	34° 43' 17.4864"	2021.08.10	상주면 상주리 산145-4	철재	남해군정
82	12055	도근점	중부	236567.022	290743.078	3.169	127° 59' 26.369"	34° 43' 14.8535"	2021.08.10	상주면 상주리 588-2	철재	남해군정
83	12056	도근점	중부	236417.446	290896.401	3.584	127° 59' 32.3362	34° 43' 9.9513"	2021.08.10	상주면 상주리 588-6	철재	남해군정
84	17114	도근점	중부	255842.938	276365.333	6.246	127 50 07.6612	34 53 44.5372	2021.08.18	고현면 갈화리 1407-2	옥상외사	남해군정
85	17115	도근점	중부	255764.933	276476.307	2.592	127 50 12.0058	34 53 41.9761	2021.08.18	고현면 갈화리 1385-1	철재	남해군정
86	17116	도근점	중부	255791.837	276582.658	2.859	127 50 16.2029	34 53 42.8202	2021.08.18	고현면 갈화리 1383-10	철재	남해군정
87	17117	도근점	중부	255806.641	276706.318	3.706	127 50 21.0777	34 53 43.2669	2021.08.18	고현면 갈화리 563-2	철재	남해군정

남해군 고시 제2021 - 130호

지적기준점(도근점)성과 폐기 고시

지적기준점이 폐기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7일

남 해 군 수

- 지적기준점성과 폐기 고시현황
 - 폐기 지적기준점(도근점) 수 : 259점(남,서면 일원)
 - 폐기 지적기준점(도근점) 내용 : 붙임 참조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 ☎860-30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종류	기준점명	좌표구분	원점	X좌표	Y좌표	상세주소	설치구분	폐기일자
1	도근점	5012	지역	중부	140347.09	279486.94	남면 평산리 산29	폐기	2021.08.27.
2	도근점	5016	지역	중부	142847.21	279362.45	남면 상가리 1107	폐기	2021.08.27.
3	도근점	5021	지역	중부	142913.5	278422.15	남면 덕월리 238	폐기	2021.08.27.
4	도근점	5025	지역	중부	142591.63	278180.02	남면 덕월리 245	폐기	2021.08.27.
5	도근점	5026	지역	중부	142599.43	278298.29	남면 덕월리 245	폐기	2021.08.27.
6	도근점	5027	지역	중부	142612	278421.98	남면 덕월리 244	폐기	2021.08.27.
7	도근점	5029	지역	중부	142707.87	278547.28	남면 덕월리 225	폐기	2021.08.27.
8	도근점	5034	지역	중부	142813.45	279223	남면 상가리 1107	폐기	2021.08.27.
9	도근점	5039	지역	중부	143141.43	279179.17	남면 상가리 1305-1	폐기	2021.08.27.
10	도근점	5040	지역	중부	143378.46	279362.66	남면 상가리 1018	폐기	2021.08.27.
11	도근점	5042	지역	중부	143582.18	279366.69	남면 상가리 674-1	폐기	2021.08.27.
12	도근점	5043	지역	중부	143690.03	279402.38	남면 상가리 1015	폐기	2021.08.27.
13	도근점	5044	지역	중부	143776.66	279437.57	남면 상가리 526-1	폐기	2021.08.27.
14	도근점	5045	지역	중부	143800.02	279593.63	남면 상가리 1010	폐기	2021.08.27.
15	도근점	5046	지역	중부	143881.38	279648.16	남면 상가리 1010	폐기	2021.08.27.
16	도근점	5053	지역	중부	143911.48	279511.69	남면 상가리 1012	폐기	2021.08.27.
17	도근점	5054	지역	중부	143363.38	279492.72	남면 상가리 693-1	폐기	2021.08.27.
18	도근점	5058	지역	중부	143803.92	279489.06	남면 상가리 1012	폐기	2021.08.27.
19	도근점	5059	지역	중부	140753.42	282366.62	남면 석교리 689-8	폐기	2021.08.27.
20	도근점	5070	지역	중부	141671.49	282107.5	남면 석교리 1056-11	폐기	2021.08.27.
21	도근점	5072	지역	중부	143061.33	278381.25	남면 덕월리 625	폐기	2021.08.27.
22	도근점	5079	지역	중부	141845.91	278708.09	남면 평산리 2429	폐기	2021.08.27.
23	도근점	5080	지역	중부	141846.59	278592.84	남면 평산리 469-5	폐기	2021.08.27.
24	도근점	5082	지역	중부	141622.7	278175.92	남면 평산리 2436	폐기	2021.08.27.
25	도근점	5087	지역	중부	139800.95	277734.03	남면 평산리 1191-2	폐기	2021.08.27.
26	도근점	5112	지역	중부	140872.68	282356.2	남면 석교리 689-2	폐기	2021.08.27.
27	도근점	5115	지역	중부	140409.22	282331.12	남면 석교리 617-2	폐기	2021.08.27.
28	도근점	5120	지역	중부	139565.69	282884.25	남면 흥현리 371-3	폐기	2021.08.27.
29	도근점	5124	지역	중부	139109.72	283230.18	남면 흥현리 78-2	폐기	2021.08.27.
30	도근점	5125	지역	중부	138918.4	283217.06	남면 흥현리 78-2	폐기	2021.08.27.
31	도근점	5126	지역	중부	138799.52	283209.85	남면 흥현리 165-3	폐기	2021.08.27.
32	도근점	5136	지역	중부	142032.78	278900.06	남면 평산리 2430	폐기	2021.08.27.
33	도근점	5137	지역	중부	142090.64	278999.24	남면 평산리 6-1	폐기	2021.08.27.
34	도근점	5138	지역	중부	142209.46	279220.89	남면 평산리 250	폐기	2021.08.27.
35	도근점	5140	지역	중부	142354.89	279359.77	남면 평산리 330-1	폐기	2021.08.27.
36	도근점	5141	지역	중부	142481.68	279339.48	남면 죽전리 1153-5	폐기	2021.08.27.
37	도근점	5142	지역	중부	142393.16	279485.53	남면 죽전리 1153-24	폐기	2021.08.27.
38	도근점	5143	지역	중부	142476.85	279503.54	남면 죽전리 1153-36	폐기	2021.08.27.
39	도근점	5144	지역	중부	142442.8	279563.09	남면 죽전리 275-1	폐기	2021.08.27.
40	도근점	5145	지역	중부	142382.28	279655.23	남면 죽전리 276-4	폐기	2021.08.27.
41	도근점	5146	지역	중부	142297.5	279679.25	남면 죽전리 1511	폐기	2021.08.27.
42	도근점	5147	지역	중부	142285.2	279806.5	남면 죽전리 1143-1	폐기	2021.08.27.
43	도근점	5148	지역	중부	142186.27	279872.49	남면 죽전리 950-1	폐기	2021.08.27.
44	도근점	5149	지역	중부	142123.13	279950.36	남면 죽전리 1511	폐기	2021.08.27.
45	도근점	5150	지역	중부	142102.93	280021.09	남면 죽전리 1511	폐기	2021.08.27.
46	도근점	5152	지역	중부	141932.58	278946.01	남면 평산리 2429	폐기	2021.08.27.
47	도근점	5153	지역	중부	141920.07	279030.34	남면 평산리 2429	폐기	2021.08.27.
48	도근점	5154	지역	중부	141948.17	279092.68	남면 평산리 199-3	폐기	2021.08.27.
49	도근점	5162	지역	중부	141958.98	279917.75	남면 죽전리 947-3	폐기	2021.08.27.
50	도근점	5166	지역	중부	142105.46	281247.42	남면 당항리 1515-2	폐기	2021.08.27.
51	도근점	5168	지역	중부	142014.72	281070.15	남면 당항리 1502-3	폐기	2021.08.27.
52	도근점	5172	지역	중부	141859.18	280780.65	남면 죽전리 1465-2	폐기	2021.08.27.
53	도근점	5174	지역	중부	141849.29	280610.93	남면 죽전리 1208	폐기	2021.08.27.
54	도근점	5176	지역	중부	141847.38	280342.96	남면 죽전리 1516	폐기	2021.08.27.
55	도근점	5180	지역	중부	142580.54	281096.36	남면 당항리 1794-2	폐기	2021.08.27.

연번	종류	기준점명	좌표구분	원점	X좌표	Y좌표	상세주소	설치구분	폐기일자
56	도근점	5182	지역	중부	142495.72	281017.67	남면 당항리 1454-1	폐기	2021.08.27.
57	도근점	5185	지역	중부	142160.65	280909.65	남면 당항리 1744	폐기	2021.08.27.
58	도근점	5186	지역	중부	142046.52	280746.26	남면 당항리 2111	폐기	2021.08.27.
59	도근점	5189	지역	중부	142141.6	280486.37	남면 죽전리 286	폐기	2021.08.27.
60	도근점	5190	지역	중부	142180.88	280342.74	남면 죽전리 1119-1	폐기	2021.08.27.
61	도근점	5191	지역	중부	142159.22	280212.99	남면 죽전리 1119-1	폐기	2021.08.27.
62	도근점	5196	지역	중부	142126.23	280952.21	남면 당항리 1666	폐기	2021.08.27.
63	도근점	5198	지역	중부	142179.62	281118.26	남면 당항리 1739	폐기	2021.08.27.
64	도근점	5199	지역	중부	142236.67	281154.28	남면 당항리 1745	폐기	2021.08.27.
65	도근점	5200	지역	중부	142326.5	281177.66	남면 당항리 1726	폐기	2021.08.27.
66	도근점	5201	지역	중부	142410.06	281210.72	남면 당항리 1714	폐기	2021.08.27.
67	도근점	5203	지역	중부	142088.54	281402.81	남면 당항리 2068-2	폐기	2021.08.27.
68	도근점	5206	지역	중부	142070.51	280888.03	남면 당항리 1455	폐기	2021.08.27.
69	도근점	5209	지역	중부	141902.77	280635.91	남면 죽전리 1465-1	폐기	2021.08.27.
70	도근점	5212	지역	중부	142079.5	280418.74	남면 죽전리 1015-3	폐기	2021.08.27.
71	도근점	5214	지역	중부	142084.75	280116.13	남면 죽전리 1511	폐기	2021.08.27.
72	도근점	5215	지역	중부	142021.97	280159.3	남면 죽전리 1511	폐기	2021.08.27.
73	도근점	5216	지역	중부	141981.98	280269.11	남면 죽전리 1134-3	폐기	2021.08.27.
74	도근점	5217	지역	중부	141959.79	280371.59	남면 죽전리 1511	폐기	2021.08.27.
75	도근점	5218	지역	중부	141884.08	280442.96	남면 죽전리 1158-1	폐기	2021.08.27.
76	도근점	5219	지역	중부	141909.54	280537.22	남면 죽전리 1192	폐기	2021.08.27.
77	도근점	5220	지역	중부	141846.93	280539.47	남면 죽전리 1215-1	폐기	2021.08.27.
78	도근점	5221	지역	중부	142123.3	279821.13	남면 죽전리 950-1	폐기	2021.08.27.
79	도근점	5222	지역	중부	142190.56	279732.59	남면 죽전리 331	폐기	2021.08.27.
80	도근점	5225	지역	중부	142341.13	279521.83	남면 평산리 261	폐기	2021.08.27.
81	도근점	5228	지역	중부	142120.36	279266.64	남면 평산리 28-4	폐기	2021.08.27.
82	도근점	5230	지역	중부	142024.09	279018.57	남면 평산리 6-4	폐기	2021.08.27.
83	도근점	5234	지역	중부	142422.55	279018.32	남면 평산리 28-1	폐기	2021.08.27.
84	도근점	5235	지역	중부	142274.96	279066.91	남면 평산리 28-1	폐기	2021.08.27.
85	도근점	5236	지역	중부	142167.63	279101.56	남면 평산리 29-2	폐기	2021.08.27.
86	도근점	5237	지역	중부	141113.18	282567.71	남면 석교리 55-5	폐기	2021.08.27.
87	도근점	5238	지역	중부	141225.06	282628.14	남면 석교리 1037	폐기	2021.08.27.
88	도근점	5239	지역	중부	141385.53	282685.92	남면 석교리 1025	폐기	2021.08.27.
89	도근점	5240	지역	중부	141334.83	282841.19	남면 당항리 535-16	폐기	2021.08.27.
90	도근점	5241	지역	중부	141265.64	282762.94	남면 석교리 47-8	폐기	2021.08.27.
91	도근점	5249	지역	중부	140568.3	282455.29	남면 석교리 603-3	폐기	2021.08.27.
92	도근점	5250	지역	중부	140549.79	282506.56	남면 석교리 603-7	폐기	2021.08.27.
93	도근점	5251	지역	중부	140546.91	282596.18	남면 석교리 186	폐기	2021.08.27.
94	도근점	5252	지역	중부	140553.98	282647.2	남면 석교리 182	폐기	2021.08.27.
95	도근점	5253	지역	중부	139174.6	278999.71	남면 임포리 산37	폐기	2021.08.27.
96	도근점	5254	지역	중부	139252.44	278965.84	남면 임포리 1049-2	폐기	2021.08.27.
97	도근점	5255	지역	중부	139309.98	278963.46	남면 임포리 1049-2	폐기	2021.08.27.
98	도근점	5256	지역	중부	139426.73	278681.86	남면 평산리 950	폐기	2021.08.27.
99	도근점	5257	지역	중부	139246.92	278677.79	남면 평산리 976	폐기	2021.08.27.
100	도근점	5258	지역	중부	139167.52	278538.22	남면 임포리 1125-1	폐기	2021.08.27.
101	도근점	5261	지역	중부	139090.38	278905.33	남면 임포리 1098	폐기	2021.08.27.
102	도근점	5262	지역	중부	139039.82	278913.12	남면 임포리 1095-2	폐기	2021.08.27.
103	도근점	5263	지역	중부	139069.27	278978.87	남면 임포리 1095-1	폐기	2021.08.27.
104	도근점	5264	지역	중부	138959.05	278528.07	남면 임포리 1138-3	폐기	2021.08.27.
105	도근점	5265	지역	중부	138897.93	278518.12	남면 임포리 산15-2	폐기	2021.08.27.
106	도근점	5266	지역	중부	138816.49	278530.23	남면 임포리 산18-1	폐기	2021.08.27.
107	도근점	5267	지역	중부	138757.23	278500.36	남면 임포리 산17	폐기	2021.08.27.
108	도근점	5268	지역	중부	138785.81	278456.29	남면 임포리 산16	폐기	2021.08.27.
109	도근점	5269	지역	중부	138815.54	278444.27	남면 임포리 1201	폐기	2021.08.27.
110	도근점	5270	지역	중부	138819.18	278385.9	남면 임포리 1199	폐기	2021.08.27.

연번	종류	기준점명	좌표구분	원점	X좌표	Y좌표	상세주소	설치구분	폐기일자
111	도근점	5273	지역	중부	138714.2	278407.42	남면 임포리 1186	폐기	2021.08.27.
112	도근점	5276	지역	중부	138685.64	278797.26	남면 선구리 1378	폐기	2021.08.27.
113	도근점	5277	지역	중부	139800.96	277734.03	남면 평산리 1191-2	폐기	2021.08.27.
114	도근점	5288	지역	중부	141762.67	280752.84	남면 죽전리 331-2 도	폐기	2021.08.27.
115	도근점	5289	지역	중부	141778.28	280826.26	남면 죽전리 369-4 도	폐기	2021.08.27.
116	도근점	5290	지역	중부	141783.46	280887.65	남면 죽전리 377-7 도	폐기	2021.08.27.
117	도근점	5297	지역	중부	141716.36	281252.7	남면 당항리 1392-3 도	폐기	2021.08.27.
118	도근점	5298	지역	중부	141739.21	281186.1	남면 당항리 1485-9 도	폐기	2021.08.27.
119	도근점	5299	지역	중부	141750.79	281126.72	남면 당항리 1384-13 도	폐기	2021.08.27.
120	도근점	5300	지역	중부	141771.36	281063.01	남면 당항리 1383-2 도	폐기	2021.08.27.
121	도근점	5301	지역	중부	141762.64	280681.73	남면 죽전리 327-1	폐기	2021.08.27.
122	도근점	5303	지역	중부	141631.61	280816.48	남면 죽전리 426-2	폐기	2021.08.27.
123	도근점	5317	지역	중부	138823.73	282277.97	남면 흥현리 525	폐기	2021.08.27.
124	도근점	5319	지역	중부	138758.99	282521.99	남면 흥현리 292-1	폐기	2021.08.27.
125	도근점	5320	지역	중부	138777.15	282630.94	남면 흥현리 275	폐기	2021.08.27.
126	도근점	5322	지역	중부	138857.03	282846.21	남면 흥현리 324-3	폐기	2021.08.27.
127	도근점	5325	지역	중부	139186.8	283167.83	남면 흥현리 12-2	폐기	2021.08.27.
128	도근점	5333	지역	중부	142375.92	282602.66	남면 당항리 278	폐기	2021.08.27.
129	도근점	5334	지역	중부	142468.2	282751.15	남면 당항리 174	폐기	2021.08.27.
130	도근점	5338	지역	중부	142376.35	282721.61	남면 당항리 285	폐기	2021.08.27.
131	도근점	5339	지역	중부	142120.65	282642.84	남면 당항리 328	폐기	2021.08.27.
132	도근점	5340	지역	중부	142008.75	282602.05	남면 당항리 336-1	폐기	2021.08.27.
133	도근점	5341	지역	중부	141892.95	282601.9	남면 당항리 379-1	폐기	2021.08.27.
134	도근점	5343	지역	중부	141439.4	282588.77	남면 당항리 2098-2	폐기	2021.08.27.
135	도근점	5345	지역	중부	141700.49	278662.46	남면 평산리 394-3	폐기	2021.08.27.
136	도근점	5347	지역	중부	141480.78	278612.18	남면 평산리 624	폐기	2021.08.27.
137	도근점	5348	지역	중부	141373.73	278594.46	남면 평산리 637	폐기	2021.08.27.
138	도근점	5349	지역	중부	141271.88	278588.43	남면 평산리 621	폐기	2021.08.27.
139	도근점	5350	지역	중부	141222.18	278621.37	남면 평산리 620	폐기	2021.08.27.
140	도근점	5357	지역	중부	141280.51	278625.93	남면 평산리 649-1	폐기	2021.08.27.
141	도근점	5360	지역	중부	141711.96	278697.58	남면 평산리 399-1	폐기	2021.08.27.
142	도근점	5361	지역	중부	141911.07	278713.72	남면 평산리 302-7	폐기	2021.08.27.
143	도근점	5368	지역	중부	138714.1	279070.46	남면 임포리 749	폐기	2021.08.27.
144	도근점	5369	지역	중부	138840.53	279328.1	남면 임포리 862-1	폐기	2021.08.27.
145	도근점	5374	지역	중부	138954.36	280689.31	남면 임포리 78	폐기	2021.08.27.
146	도근점	5376	지역	중부	138872.99	281393.78	남면 임포리 5-2	폐기	2021.08.27.
147	도근점	5380	지역	중부	141948	278567.19	남면 평산리 479-3	폐기	2021.08.27.
148	도근점	5382	지역	중부	141647.43	278187.61	남면 평산리 531-1	폐기	2021.08.27.
149	도근점	5386	지역	중부	143841.19	276820.27	남면 덕월리 1135	폐기	2021.08.27.
150	도근점	5389	지역	중부	143630.81	277234.37	남면 덕월리 산137-4	폐기	2021.08.27.
151	도근점	5394	지역	중부	142881.47	277500.82	남면 덕월리 359-3	폐기	2021.08.27.
152	도근점	5396	지역	중부	142949.67	278123.7	남면 덕월리 424	폐기	2021.08.27.
153	도근점	5398	지역	중부	140531.96	282695.78	남면 석교리 199	폐기	2021.08.27.
154	도근점	5402	지역	중부	136573.41	281092.32	남면 흥현리 1424-4	폐기	2021.08.27.
155	도근점	5407	지역	중부	142032.43	280718.67	남면 죽전리 349-1	폐기	2021.08.27.
156	도근점	5409	지역	중부	142032.65	280957.97	남면 당항리 2113	폐기	2021.08.27.
157	도근점	5413	지역	중부	142105.63	281247.15	남면 당항리 1515-2	폐기	2021.08.27.
158	도근점	5422	지역	중부	143412.87	278355.95	남면 덕월리 801-1	폐기	2021.08.27.
159	도근점	5423	지역	중부	143323.83	278321.48	남면 덕월리 721-1	폐기	2021.08.27.
160	도근점	5426	지역	중부	143166.81	278396.1	남면 덕월리 662-1	폐기	2021.08.27.
161	도근점	5430	지역	중부	141270.66	277053.74	남면 평산리 1848-1	폐기	2021.08.27.
162	도근점	5432	지역	중부	141267.08	277266.29	남면 평산리 1822-2	폐기	2021.08.27.
163	도근점	5440	지역	중부	136869.15	281858.26	남면 흥현리 915	폐기	2021.08.27.
164	도근점	5456	지역	중부	142359.25	278407.79	남면 덕월리 산35-5	폐기	2021.08.27.
165	도근점	5463	지역	중부	143145.79	277778.98	남면 덕월리 376-1	폐기	2021.08.27.

연번	종류	기준점명	좌표구분	원점	X좌표	Y좌표	상세주소	설치구분	폐기일자
166	도근점	5464	지역	중부	143143.97	277682.19	남면 덕월리 363-4	폐기	2021.08.27.
167	도근점	5467	지역	중부	142942.51	277332.41	남면 덕월리 345-2	폐기	2021.08.27.
168	도근점	5468	지역	중부	142878.71	277347.29	남면 덕월리 345-2	폐기	2021.08.27.
169	도근점	5469	지역	중부	142802.54	277413.96	남면 덕월리 339	폐기	2021.08.27.
170	도근점	5471	지역	중부	142411.01	277606.45	남면 덕월리 308-2	폐기	2021.08.27.
171	도근점	5472	지역	중부	142311.39	277643.88	남면 덕월리 308-2	폐기	2021.08.27.
172	도근점	5480	지역	중부	137221.95	279354.44	남면 선구리 478-2	폐기	2021.08.27.
173	도근점	5485	지역	중부	137191.21	279493.91	남면 선구리 164-1	폐기	2021.08.27.
174	도근점	5492	지역	중부	137096.06	279602.92	남면 선구리 159-1	폐기	2021.08.27.
175	도근점	6010	지역	중부	146132.48	276518.83	서면서상리 1258-1	폐기	2021.08.27.
176	도근점	6011	지역	중부	146180.95	276572.07	서면서상리 562	폐기	2021.08.27.
177	도근점	6012	지역	중부	146148.85	276598.77	서면서상리 555	폐기	2021.08.27.
178	도근점	6027	지역	중부	145323.59	276415.25	서면서상리 1178-2	폐기	2021.08.27.
179	도근점	6028	지역	중부	145211.47	276416.5	서면서상리 1170-2	폐기	2021.08.27.
180	도근점	6029	지역	중부	145153.01	276483.75	서면 서상리 1169	폐기	2021.08.27.
181	도근점	6050	지역	중부	152888.01	278434.61	서면 작장리 165-7	폐기	2021.08.27.
182	도근점	6054	지역	중부	153108.27	278187.03	서면 중현리 225-2	폐기	2021.08.27.
183	도근점	6055	지역	중부	153232.23	278106.21	서면 정포리 1096	폐기	2021.08.27.
184	도근점	6056	지역	중부	153313.44	278036.51	서면 정포리 6	폐기	2021.08.27.
185	도근점	6057	지역	중부	153365.42	277933.49	서면 정포리 산16-3	폐기	2021.08.27.
186	도근점	6065	지역	중부	154106.58	276263.77	서면 정포리 846-13	폐기	2021.08.27.
187	도근점	6068	지역	중부	145413.59	276442.15	서면 서상리 1182	폐기	2021.08.27.
188	도근점	6069	지역	중부	145405.13	276066.17	서면 서상리 1182	폐기	2021.08.27.
189	도근점	6070	지역	중부	145563.8	276030.86	서면 서상리 1182-2	폐기	2021.08.27.
190	도근점	6073	지역	중부	147934.46	279484.55	서면 연죽리 산13	폐기	2021.08.27.
191	도근점	6074	지역	중부	147764.61	279569.81	서면 연죽리 산7	폐기	2021.08.27.
192	도근점	6076	지역	중부	147302.23	279476.69	서면 연죽리 산10-7	폐기	2021.08.27.
193	도근점	6077	지역	중부	147127.09	279492.04	서면 연죽리 산178-4	폐기	2021.08.27.
194	도근점	6078	지역	중부	147018.71	279495.96	서면 연죽리 산179-3	폐기	2021.08.27.
195	도근점	6079	지역	중부	147071.15	279425.9	서면 연죽리 산177-4	폐기	2021.08.27.
196	도근점	6080	지역	중부	154262.53	276323.64	서면 정포리 885	폐기	2021.08.27.
197	도근점	6082	지역	중부	151383.86	274466.41	서면 노구리 1348-5	폐기	2021.08.27.
198	도근점	6083	지역	중부	150099.34	274777.99	서면 남상리 1166-12	폐기	2021.08.27.
199	도근점	6084	지역	중부	149156.36	274653.82	서면 작장리 1081-1	폐기	2021.08.27.
200	도근점	6085	지역	중부	148646.56	274638.79	서면 작장리 923-36	폐기	2021.08.27.
201	도근점	6087	지역	중부	146546.62	275796.49	서면 서상리 1640-56	폐기	2021.08.27.
202	도근점	6097	지역	중부	146026.84	278397.37	서면 대정리 1769	폐기	2021.08.27.
203	도근점	6102	지역	중부	150136.26	274863.38	서면 남상리 1164-16	폐기	2021.08.27.
204	도근점	6103	지역	중부	150089.15	275187.4	서면 남상리 189-5	폐기	2021.08.27.
205	도근점	6104	지역	중부	150019.05	275501.52	서면 남상리 산157	폐기	2021.08.27.
206	도근점	6105	지역	중부	150006.87	275657.63	서면 남상리 산153	폐기	2021.08.27.
207	도근점	6106	지역	중부	150078.86	275779.77	서면 남상리 산153	폐기	2021.08.27.
208	도근점	6109	지역	중부	149800.13	275745.47	서면 남상리 산183	폐기	2021.08.27.
209	도근점	6114	지역	중부	150030.42	275171.46	서면 남상리 산175	폐기	2021.08.27.
210	도근점	6115	지역	중부	149930.3	275151.84	서면 남상리 산173-4	폐기	2021.08.27.
211	도근점	6116	지역	중부	149934.39	274951.3	서면 남상리 1252-2	폐기	2021.08.27.
212	도근점	6117	지역	중부	146696.6	279481.54	서면 대정리 543-5	폐기	2021.08.27.
213	도근점	6119	지역	중부	146628.43	279980.75	서면 대정리 508	폐기	2021.08.27.
214	도근점	6122	지역	중부	146061.83	277156.43	서면 서상리 466	폐기	2021.08.27.
215	도근점	6128	지역	중부	149016.71	274810.24	서면 작장리 1055-7	폐기	2021.08.27.
216	도근점	6129	지역	중부	149058.98	274700.02	서면 작장리 1064	폐기	2021.08.27.
217	도근점	6130	지역	중부	148985.18	274630.78	서면 작장리 1066	폐기	2021.08.27.
218	도근점	6131	지역	중부	149054.32	274556.81	서면 작장리 1529	폐기	2021.08.27.
219	도근점	6135	지역	중부	148841.67	274370.85	서면 작장리 1505-1	폐기	2021.08.27.
220	도근점	6143	지역	중부	148849.99	274898.68	서면 작장리 1120-1	폐기	2021.08.27.

남 해 군 공 보

(10) 제 700 호

2021년 9월 6일

연번	종류	기준점명	좌표구분	원점	X좌표	Y좌표	상세주소	설치구분	폐기일자
221	도근점	6150	지역	중부	151825.32	274998.8	서면 노구리 1076-3	폐기	2021.08.27.
222	도근점	6157	지역	중부	146461.26	279204.85	서면 대정리 672-4	폐기	2021.08.27.
223	도근점	6158	지역	중부	146163.79	279180.82	서면 대정리 634	폐기	2021.08.27.
224	도근점	6163	지역	중부	146639.34	279827.88	서면 대정리 471	폐기	2021.08.27.
225	도근점	6164	지역	중부	153255.4	277998.83	서면 중현리 35-1	폐기	2021.08.27.
226	도근점	6172	지역	중부	153406.63	276986.13	서면 중현리 981-2	폐기	2021.08.27.
227	도근점	6173	지역	중부	153207.63	276978.29	서면 중현리 1008-1	폐기	2021.08.27.
228	도근점	6174	지역	중부	146156.53	276601.23	서면 서상리 555	폐기	2021.08.27.
229	도근점	6176	지역	중부	146388.98	276499.71	서면 서상리 1442	폐기	2021.08.27.
230	도근점	6182	지역	중부	146868.12	277257.3	서면 서호리 210	폐기	2021.08.27.
231	도근점	6185	지역	중부	154010.22	275671.8	서면 정포 1076-9	폐기	2021.08.27.
232	도근점	6191	지역	중부	152954.06	275512.6	서면 노구 1419	폐기	2021.08.27.
233	도근점	6196	지역	중부	152314.41	274902.27	서면 노구 856	폐기	2021.08.27.
234	도근점	6211	지역	중부	151284.49	274576.42	서면 남상 559-1	폐기	2021.08.27.
235	도근점	6212	지역	중부	151210.01	274950.07	서면 남상 산21-1	폐기	2021.08.27.
236	도근점	6213	지역	중부	151254.09	274985.77	서면 남상 541-40	폐기	2021.08.27.
237	도근점	6214	지역	중부	151374.76	274740.78	서면 노구 1273-5	폐기	2021.08.27.
238	도근점	6216	지역	중부	146129.24	276016.02	서면 서상 1316-7	폐기	2021.08.27.
239	도근점	6225	지역	중부	147275.88	275164.47	서면 작장 213	폐기	2021.08.27.
240	도근점	6226	지역	중부	147338.13	275133.65	서면 작장 212	폐기	2021.08.27.
241	도근점	6227	지역	중부	147401.02	275095.27	서면 작장 254	폐기	2021.08.27.
242	도근점	6228	지역	중부	147525.66	275012.07	서면 작장 257	폐기	2021.08.27.
243	도근점	6234	지역	중부	148457.69	274713.5	서면 작장 819	폐기	2021.08.27.
244	도근점	6239	지역	중부	146806.07	275802.52	서면 서상 1600-2	폐기	2021.08.27.
245	도근점	6247	지역	중부	151186.82	274497.88	서면 남상 1588-2	폐기	2021.08.27.
246	도근점	6248	지역	중부	151154.25	274391.11	서면 남상 1591-1	폐기	2021.08.27.
247	도근점	6249	지역	중부	151209.54	274168.21	서면 남상 1606-2	폐기	2021.08.27.
248	도근점	6252	지역	중부	151184.86	273958.59	서면 남상 1791-8	폐기	2021.08.27.
249	도근점	6253	지역	중부	151157.41	273876.97	서면 남상 1791-7	폐기	2021.08.27.
250	도근점	6258	지역	중부	151008.62	274681.78	서면 남상 672-2	폐기	2021.08.27.
251	도근점	6259	지역	중부	150895.35	274667.2	서면 남상 680-1	폐기	2021.08.27.
252	도근점	6260	지역	중부	150812.07	274681.98	서면 남상 723-1	폐기	2021.08.27.
253	도근점	6264	지역	중부	150309.7	274782.47	서면 남상 1047-4	폐기	2021.08.27.
254	도근점	6265	지역	중부	151437.45	275762.32	서면 노구 113-7	폐기	2021.08.27.
255	도근점	6267	지역	중부	153865.99	276394.59	서면 정포 669-4	폐기	2021.08.27.
256	도근점	6273	지역	중부	152618.54	274945.21	서면 노구 434-11	폐기	2021.08.27.
257	도근점	6280	지역	중부	153866.09	276020.24	서면 정포 1077-28	폐기	2021.08.27.
258	도근점	6286	지역	중부	152943.99	278554.94	서면 중현 22-2	폐기	2021.08.27.
259	도근점	6287	지역	중부	153018.57	275921.69	서면 중현 1428	폐기	2021.08.27.

연번	종류	기준점명	좌표구분	X좌표	Y좌표	상세주소	조사날짜	폐기일자
1	도근점	5012	지역	140347.09	279486.94	남면 평산리 산29	2021-08-25	2021.08.27.
2	도근점	5016	지역	142847.21	279362.45	남면 상가리 1107	2021-08-23	2021.08.27.
3	도근점	5021	지역	142913.5	278422.15	남면 덕월리 238	2021-08-23	2021.08.27.
4	도근점	5025	지역	142591.63	278180.02	남면 덕월리 245	2021-08-23	2021.08.27.
5	도근점	5026	지역	142599.43	278298.29	남면 덕월리 245	2021-08-23	2021.08.27.
6	도근점	5027	지역	142612	278421.98	남면 덕월리 244	2021-08-23	2021.08.27.
7	도근점	5029	지역	142707.87	278547.28	남면 덕월리 225	2021-08-23	2021.08.27.
8	도근점	5034	지역	142813.45	279223	남면 상가리 1107	2021-08-23	2021.08.27.
9	도근점	5039	지역	143141.43	279179.17	남면 상가리 1305-1	2021-08-23	2021.08.27.
10	도근점	5040	지역	143378.46	279362.66	남면 상가리 1018	2021-08-23	2021.08.27.
11	도근점	5042	지역	143582.18	279366.69	남면 상가리 674-1	2021-08-23	2021.08.27.
12	도근점	5043	지역	143690.03	279402.38	남면 상가리 1015	2021-08-23	2021.08.27.
13	도근점	5044	지역	143776.66	279437.57	남면 상가리 526-1	2021-08-23	2021.08.27.
14	도근점	5045	지역	143800.02	279593.63	남면 상가리 1010	2021-08-23	2021.08.27.
15	도근점	5046	지역	143881.38	279648.16	남면 상가리 1010	2021-08-23	2021.08.27.
16	도근점	5053	지역	143911.48	279511.69	남면 상가리 1012	2021-08-23	2021.08.27.
17	도근점	5054	지역	143363.38	279492.72	남면 상가리 693-1	2021-08-23	2021.08.27.
18	도근점	5058	지역	143803.92	279489.06	남면 상가리 1012	2021-08-23	2021.08.27.
19	도근점	5059	지역	140753.42	282366.62	남면 석교리 689-8	2021-08-26	2021.08.27.
20	도근점	5070	지역	141671.49	282107.5	남면 석교리 1056-11	2021-08-26	2021.08.27.
21	도근점	5072	지역	143061.33	278381.25	남면 덕월리 625	2021-08-23	2021.08.27.
22	도근점	5079	지역	141845.91	278708.09	남면 평산리 2429	2021-08-25	2021.08.27.
23	도근점	5080	지역	141846.59	278592.84	남면 평산리 469-5	2021-08-25	2021.08.27.
24	도근점	5082	지역	141622.7	278175.92	남면 평산리 2436	2021-08-25	2021.08.27.
25	도근점	5087	지역	139800.95	277734.03	남면 평산리 1191-2	2021-08-25	2021.08.27.
26	도근점	5112	지역	140872.68	282356.2	남면 석교리 689-2	2021-08-26	2021.08.27.
27	도근점	5115	지역	140409.22	282331.12	남면 석교리 617-2	2021-08-26	2021.08.27.
28	도근점	5120	지역	139565.69	282884.25	남면 흥현리 371-3	2021-08-26	2021.08.27.
29	도근점	5124	지역	139109.72	283230.18	남면 흥현리 78-2	2021-08-26	2021.08.27.
30	도근점	5125	지역	138918.4	283217.06	남면 흥현리 78-2	2021-08-26	2021.08.27.
31	도근점	5126	지역	138799.52	283209.85	남면 흥현리 165-3	2021-08-26	2021.08.27.
32	도근점	5136	지역	142032.78	278900.06	남면 평산리 2430	2021-08-25	2021.08.27.
33	도근점	5137	지역	142090.64	278999.24	남면 평산리 6-1	2021-08-25	2021.08.27.

연번	종류	기준점명	좌표구분	X좌표	Y좌표	상세주소	조사날짜	폐기일자
34	도근점	5138	지역	142209.46	279220.89	남면 평산리 250	2021-08-25	2021.08.27.
35	도근점	5140	지역	142354.89	279359.77	남면 평산리 330-1	2021-08-25	2021.08.27.
36	도근점	5141	지역	142481.68	279339.48	남면 죽전리 1153-5	2021-06-22	2021.08.27.
37	도근점	5142	지역	142393.16	279485.53	남면 죽전리 1153-24	2021-06-22	2021.08.27.
38	도근점	5143	지역	142476.85	279503.54	남면 죽전리 1153-36	2021-06-22	2021.08.27.
39	도근점	5144	지역	142442.8	279563.09	남면 죽전리 275-1	2021-06-22	2021.08.27.
40	도근점	5145	지역	142382.28	279655.23	남면 죽전리 276-4	2021-06-22	2021.08.27.
41	도근점	5146	지역	142297.5	279679.25	남면 죽전리 1511	2021-06-22	2021.08.27.
42	도근점	5147	지역	142285.2	279806.5	남면 죽전리 1143-1	2021-06-22	2021.08.27.
43	도근점	5148	지역	142186.27	279872.49	남면 죽전리 950-1	2021-06-22	2021.08.27.
44	도근점	5149	지역	142123.13	279950.36	남면 죽전리 1511	2021-06-22	2021.08.27.
45	도근점	5150	지역	142102.93	280021.09	남면 죽전리 1511	2021-06-22	2021.08.27.
46	도근점	5152	지역	141932.58	278946.01	남면 평산리 2429	2021-08-25	2021.08.27.
47	도근점	5153	지역	141920.07	279030.34	남면 평산리 2429	2021-08-25	2021.08.27.
48	도근점	5154	지역	141948.17	279092.68	남면 평산리 199-3	2021-08-25	2021.08.27.
49	도근점	5162	지역	141958.98	279917.75	남면 죽전리 947-3	2021-06-22	2021.08.27.
50	도근점	5166	지역	142105.46	281247.42	남면 당항리 1515-2	2021-08-26	2021.08.27.
51	도근점	5168	지역	142014.72	281070.15	남면 당항리 1502-3	2021-08-26	2021.08.27.
52	도근점	5172	지역	141859.18	280780.65	남면 죽전리 1465-2	2021-06-22	2021.08.27.
53	도근점	5174	지역	141849.29	280610.93	남면 죽전리 1208	2021-06-22	2021.08.27.
54	도근점	5176	지역	141847.38	280342.96	남면 죽전리 1516	2021-06-22	2021.08.27.
55	도근점	5180	지역	142580.54	281096.36	남면 당항리 1794-2	2021-08-26	2021.08.27.
56	도근점	5182	지역	142495.72	281017.67	남면 당항리 1454-1	2021-08-26	2021.08.27.
57	도근점	5185	지역	142160.65	280909.65	남면 당항리 1744	2021-08-26	2021.08.27.
58	도근점	5186	지역	142046.52	280746.26	남면 당항리 2111	2021-08-26	2021.08.27.
59	도근점	5189	지역	142141.6	280486.37	남면 죽전리 286	2021-06-22	2021.08.27.
60	도근점	5190	지역	142180.88	280342.74	남면 죽전리 1119-1	2021-06-22	2021.08.27.
61	도근점	5191	지역	142159.22	280212.99	남면 죽전리 1119-1	2021-06-22	2021.08.27.
62	도근점	5196	지역	142126.23	280952.21	남면 당항리 1666	2021-08-26	2021.08.27.
63	도근점	5198	지역	142179.62	281118.26	남면 당항리 1739	2021-08-26	2021.08.27.
64	도근점	5199	지역	142236.67	281154.28	남면 당항리 1745	2021-08-26	2021.08.27.
65	도근점	5200	지역	142326.5	281177.66	남면 당항리 1726	2021-08-26	2021.08.27.
66	도근점	5201	지역	142410.06	281210.72	남면 당항리 1714	2021-08-26	2021.08.27.

연번	종류	기준점명	좌표구분	X좌표	Y좌표	상세주소	조사날짜	폐기일자
67	도근점	5203	지역	142088.54	281402.81	남면 당항리 2068-2	2021-08-26	2021.08.27.
68	도근점	5206	지역	142070.51	280888.03	남면 당항리 1455	2021-08-26	2021.08.27.
69	도근점	5209	지역	141902.77	280635.91	남면 죽전리 1465-1	2021-06-22	2021.08.27.
70	도근점	5212	지역	142079.5	280418.74	남면 죽전리 1015-3	2021-06-22	2021.08.27.
71	도근점	5214	지역	142084.75	280116.13	남면 죽전리 1511	2021-06-22	2021.08.27.
72	도근점	5215	지역	142021.97	280159.3	남면 죽전리 1511	2021-06-22	2021.08.27.
73	도근점	5216	지역	141981.98	280269.11	남면 죽전리 1134-3	2021-06-22	2021.08.27.
74	도근점	5217	지역	141959.79	280371.59	남면 죽전리 1511	2021-06-22	2021.08.27.
75	도근점	5218	지역	141884.08	280442.96	남면 죽전리 1158-1	2021-06-22	2021.08.27.
76	도근점	5219	지역	141909.54	280537.22	남면 죽전리 1192	2021-06-22	2021.08.27.
77	도근점	5220	지역	141846.93	280539.47	남면 죽전리 1215-1	2021-06-22	2021.08.27.
78	도근점	5221	지역	142123.3	279821.13	남면 죽전리 950-1	2021-06-22	2021.08.27.
79	도근점	5222	지역	142190.56	279732.59	남면 죽전리 331	2021-06-22	2021.08.27.
80	도근점	5225	지역	142341.13	279521.83	남면 평산리 261	2021-08-25	2021.08.27.
81	도근점	5228	지역	142120.36	279266.64	남면 평산리 28-4	2021-08-25	2021.08.27.
82	도근점	5230	지역	142024.09	279018.57	남면 평산리 6-4	2021-08-25	2021.08.27.
83	도근점	5234	지역	142422.55	279018.32	남면 평산리 28-1	2021-08-25	2021.08.27.
84	도근점	5235	지역	142274.96	279066.91	남면 평산리 28-1	2021-08-25	2021.08.27.
85	도근점	5236	지역	142167.63	279101.56	남면 평산리 29-2	2021-08-25	2021.08.27.
86	도근점	5237	지역	141113.18	282567.71	남면 석교리 55-5	2021-08-26	2021.08.27.
87	도근점	5238	지역	141225.06	282628.14	남면 석교리 1037	2021-08-26	2021.08.27.
88	도근점	5239	지역	141385.53	282685.92	남면 석교리 1025	2021-08-26	2021.08.27.
89	도근점	5240	지역	141334.83	282841.19	남면 당항리 535-16	2021-08-26	2021.08.27.
90	도근점	5241	지역	141265.64	282762.94	남면 석교리 47-8	2021-08-26	2021.08.27.
91	도근점	5249	지역	140568.3	282455.29	남면 석교리 603-3	2021-08-26	2021.08.27.
92	도근점	5250	지역	140549.79	282506.56	남면 석교리 603-7	2021-08-26	2021.08.27.
93	도근점	5251	지역	140546.91	282596.18	남면 석교리 186	2021-08-26	2021.08.27.
94	도근점	5252	지역	140553.98	282647.2	남면 석교리 182	2021-08-26	2021.08.27.
95	도근점	5253	지역	139174.6	278999.71	남면 임포리 산37	2021-08-25	2021.08.27.
96	도근점	5254	지역	139252.44	278965.84	남면 임포리 1049-2	2021-08-25	2021.08.27.
97	도근점	5255	지역	139309.98	278963.46	남면 임포리 1049-2	2021-08-25	2021.08.27.
98	도근점	5256	지역	139426.73	278681.86	남면 평산리 950	2021-08-25	2021.08.27.
99	도근점	5257	지역	139246.92	278677.79	남면 평산리 976	2021-08-25	2021.08.27.

연번	종류	기준점명	좌표구분	X좌표	Y좌표	상세주소	조사날짜	폐기일자
100	도근점	5258	지역	139167.52	278538.22	남면 임포리 1125-1	2021-08-25	2021.08.27.
101	도근점	5261	지역	139090.38	278905.33	남면 임포리 1098	2021-08-25	2021.08.27.
102	도근점	5262	지역	139039.82	278913.12	남면 임포리 1095-2	2021-08-25	2021.08.27.
103	도근점	5263	지역	139069.27	278978.87	남면 임포리 1095-1	2021-08-25	2021.08.27.
104	도근점	5264	지역	138959.05	278528.07	남면 임포리 1138-3	2021-08-25	2021.08.27.
105	도근점	5265	지역	138897.93	278518.12	남면 임포리 산15-2	2021-08-25	2021.08.27.
106	도근점	5266	지역	138816.49	278530.23	남면 임포리 산18-1	2021-08-25	2021.08.27.
107	도근점	5267	지역	138757.23	278500.36	남면 임포리 산17	2021-08-25	2021.08.27.
108	도근점	5268	지역	138785.81	278456.29	남면 임포리 산16	2021-08-25	2021.08.27.
109	도근점	5269	지역	138815.54	278444.27	남면 임포리 1201	2021-08-25	2021.08.27.
110	도근점	5270	지역	138819.18	278385.9	남면 임포리 1199	2021-08-25	2021.08.27.
111	도근점	5273	지역	138714.2	278407.42	남면 임포리 1186	2021-08-25	2021.08.27.
112	도근점	5276	지역	138685.64	278797.26	남면 선구리 1378	2021-08-25	2021.08.27.
113	도근점	5277	지역	139800.96	277734.03	남면 평산리 1191-2	2021-08-25	2021.08.27.
114	도근점	5288	지역	141762.67	280752.84	남면 죽전리 331-2 도	2021-06-22	2021.08.27.
115	도근점	5289	지역	141778.28	280826.26	남면 죽전리 369-4 도	2021-06-22	2021.08.27.
116	도근점	5290	지역	141783.46	280887.65	남면 죽전리 377-7 도	2021-06-22	2021.08.27.
117	도근점	5297	지역	141716.36	281252.7	남면 당항리 1392-3 도	2021-08-26	2021.08.27.
118	도근점	5298	지역	141739.21	281186.1	남면 당항리 1485-9 도	2021-08-26	2021.08.27.
119	도근점	5299	지역	141750.79	281126.72	남면 당항리 1384-13	2021-08-26	2021.08.27.
120	도근점	5300	지역	141771.36	281063.01	남면 당항리 1383-2 도	2021-08-26	2021.08.27.
121	도근점	5301	지역	141762.64	280681.73	남면 죽전리 327-1	2021-06-22	2021.08.27.
122	도근점	5303	지역	141631.61	280816.48	남면 죽전리 426-2	2021-06-22	2021.08.27.
123	도근점	5317	지역	138823.73	282277.97	남면 흥현리 525	2021-08-26	2021.08.27.
124	도근점	5319	지역	138758.99	282521.99	남면 흥현리 292-1	2021-08-26	2021.08.27.
125	도근점	5320	지역	138777.15	282630.94	남면 흥현리 275	2021-08-26	2021.08.27.
126	도근점	5322	지역	138857.03	282846.21	남면 흥현리 324-3	2021-08-26	2021.08.27.
127	도근점	5325	지역	139186.8	283167.83	남면 흥현리 12-2	2021-08-26	2021.08.27.
128	도근점	5333	지역	142375.92	282602.66	남면 당항리 278	2021-08-26	2021.08.27.
129	도근점	5334	지역	142468.2	282751.15	남면 당항리 174	2021-08-26	2021.08.27.
130	도근점	5338	지역	142376.35	282721.61	남면 당항리 285	2021-08-26	2021.08.27.
131	도근점	5339	지역	142120.65	282642.84	남면 당항리 328	2021-08-26	2021.08.27.
132	도근점	5340	지역	142008.75	282602.05	남면 당항리 336-1	2021-08-26	2021.08.27.

연번	종류	기준점명	좌표구분	X좌표	Y좌표	상세주소	조사날짜	폐기일자
133	도근점	5341	지역	141892.95	282601.9	남면 당항리 379-1	2021-08-26	2021.08.27.
134	도근점	5343	지역	141439.4	282588.77	남면 당항리 2098-2	2021-08-26	2021.08.27.
135	도근점	5345	지역	141700.49	278662.46	남면 평산리 394-3	2021-08-25	2021.08.27.
136	도근점	5347	지역	141480.78	278612.18	남면 평산리 624	2021-08-25	2021.08.27.
137	도근점	5348	지역	141373.73	278594.46	남면 평산리 637	2021-08-25	2021.08.27.
138	도근점	5349	지역	141271.88	278588.43	남면 평산리 621	2021-08-25	2021.08.27.
139	도근점	5350	지역	141222.18	278621.37	남면 평산리 620	2021-08-25	2021.08.27.
140	도근점	5357	지역	141280.51	278625.93	남면 평산리 649-1	2021-08-25	2021.08.27.
141	도근점	5360	지역	141711.96	278697.58	남면 평산리 399-1	2021-08-25	2021.08.27.
142	도근점	5361	지역	141911.07	278713.72	남면 평산리 302-7	2021-08-25	2021.08.27.
143	도근점	5368	지역	138714.1	279070.46	남면 임포리 749	2021-08-25	2021.08.27.
144	도근점	5369	지역	138840.53	279328.1	남면 임포리 862-1	2021-08-25	2021.08.27.
145	도근점	5374	지역	138954.36	280689.31	남면 임포리 78	2021-08-25	2021.08.27.
146	도근점	5376	지역	138872.99	281393.78	남면 임포리 5-2	2021-08-25	2021.08.27.
147	도근점	5380	지역	141948	278567.19	남면 평산리 479-3	2021-08-25	2021.08.27.
148	도근점	5382	지역	141647.43	278187.61	남면 평산리 531-1	2021-08-25	2021.08.27.
149	도근점	5386	지역	143841.19	276820.27	남면 덕월리 1135	2021-08-23	2021.08.27.
150	도근점	5389	지역	143630.81	277234.37	남면 덕월리 산137-4	2021-08-23	2021.08.27.
151	도근점	5394	지역	142881.47	277500.82	남면 덕월리 359-3	2021-08-23	2021.08.27.
152	도근점	5396	지역	142949.67	278123.7	남면 덕월리 424	2021-08-23	2021.08.27.
153	도근점	5398	지역	140531.96	282695.78	남면 석교리 199	2021-08-26	2021.08.27.
154	도근점	5402	지역	136573.41	281092.32	남면 흥현리 1424-4	2021-08-26	2021.08.27.
155	도근점	5407	지역	142032.43	280718.67	남면 죽전리 349-1	2021-06-22	2021.08.27.
156	도근점	5409	지역	142032.65	280957.97	남면 당항리 2113	2021-08-26	2021.08.27.
157	도근점	5413	지역	142105.63	281247.15	남면 당항리 1515-2	2021-08-26	2021.08.27.
158	도근점	5422	지역	143412.87	278355.95	남면 덕월리 801-1	2021-08-23	2021.08.27.
159	도근점	5423	지역	143323.83	278321.48	남면 덕월리 721-1	2021-08-23	2021.08.27.
160	도근점	5426	지역	143166.81	278396.1	남면 덕월리 662-1	2021-08-23	2021.08.27.
161	도근점	5430	지역	141270.66	277053.74	남면 평산리 1848-1	2021-08-25	2021.08.27.
162	도근점	5432	지역	141267.08	277266.29	남면 평산리 1822-2	2021-08-25	2021.08.27.
163	도근점	5440	지역	136869.15	281858.26	남면 흥현리 915	2021-08-26	2021.08.27.
164	도근점	5456	지역	142359.25	278407.79	남면 덕월리 산35-5	2021-08-23	2021.08.27.
165	도근점	5463	지역	143145.79	277778.98	남면 덕월리 376-1	2021-08-23	2021.08.27.

연번	종류	기준점명	좌표구분	X좌표	Y좌표	상세주소	조사날짜	폐기일자
166	도근점	5464	지역	143143.97	277682.19	남면 덕월리 363-4	2021-08-23	2021.08.27.
167	도근점	5467	지역	142942.51	277332.41	남면 덕월리 345-2	2021-08-23	2021.08.27.
168	도근점	5468	지역	142878.71	277347.29	남면 덕월리 345-2	2021-08-23	2021.08.27.
169	도근점	5469	지역	142802.54	277413.96	남면 덕월리 339	2021-08-23	2021.08.27.
170	도근점	5471	지역	142411.01	277606.45	남면 덕월리 308-2	2021-08-23	2021.08.27.
171	도근점	5472	지역	142311.39	277643.88	남면 덕월리 308-2	2021-08-23	2021.08.27.
172	도근점	5480	지역	137221.95	279354.44	남면 선구리 478-2	2021-08-25	2021.08.27.
173	도근점	5485	지역	137191.21	279493.91	남면 선구리 164-1	2021-08-25	2021.08.27.
174	도근점	5492	지역	137096.06	279602.92	남면 선구리 159-1	2021-08-25	2021.08.27.
175	도근점	6010	지역	146132.48	276518.83	서면서상리 1258-1	2021-08-10	2021.08.27.
176	도근점	6011	지역	146180.95	276572.07	서면서상리 562	2021-08-10	2021.08.27.
177	도근점	6012	지역	146148.85	276598.77	서면서상리 555	2021-08-10	2021.08.27.
178	도근점	6027	지역	145323.59	276415.25	서면서상리 1178-2	2021-08-10	2021.08.27.
179	도근점	6028	지역	145211.47	276416.5	서면서상리 1170-2	2021-08-10	2021.08.27.
180	도근점	6029	지역	145153.01	276483.75	서면 서상리 1169	2021-08-10	2021.08.27.
181	도근점	6050	지역	152888.01	278434.61	서면 작장리 165-7	2021-08-10	2021.08.27.
182	도근점	6054	지역	153108.27	278187.03	서면 중현리 225-2	2021-08-11	2021.08.27.
183	도근점	6055	지역	153232.23	278106.21	서면 정포리 1096	2021-08-11	2021.08.27.
184	도근점	6056	지역	153313.44	278036.51	서면 정포리 6	2021-08-11	2021.08.27.
185	도근점	6057	지역	153365.42	277933.49	서면 정포리 산16-3	2021-08-11	2021.08.27.
186	도근점	6065	지역	154106.58	276263.77	서면 정포리 846-13	2021-08-11	2021.08.27.
187	도근점	6068	지역	145413.59	276442.15	서면 서상리 1182	2021-08-10	2021.08.27.
188	도근점	6069	지역	145405.13	276066.17	서면 서상리 1182	2021-08-10	2021.08.27.
189	도근점	6070	지역	145563.8	276030.86	서면 서상리 1182-2	2021-08-10	2021.08.27.
190	도근점	6073	지역	147934.46	279484.55	서면 연죽리 산13	2021-08-10	2021.08.27.
191	도근점	6074	지역	147764.61	279569.81	서면 연죽리 산7	2021-08-10	2021.08.27.
192	도근점	6076	지역	147302.23	279476.69	서면 연죽리 산10-7	2021-08-10	2021.08.27.
193	도근점	6077	지역	147127.09	279492.04	서면 연죽리 산178-4	2021-08-10	2021.08.27.
194	도근점	6078	지역	147018.71	279495.96	서면 연죽리 산179-3	2021-08-10	2021.08.27.
195	도근점	6079	지역	147071.15	279425.9	서면 연죽리 산177-4	2021-08-10	2021.08.27.
196	도근점	6080	지역	154262.53	276323.64	서면 정포리 885	2021-08-11	2021.08.27.
197	도근점	6082	지역	151383.86	274466.41	서면 노구리 1348-5	2021-08-11	2021.08.27.
198	도근점	6083	지역	150099.34	274777.99	서면 남상리 1166-12	2021-08-11	2021.08.27.

연번	종류	기준점명	좌표구분	X좌표	Y좌표	상세주소	조사날짜	폐기일자
199	도근점	6084	지역	149156.36	274653.82	서면 작장리 1081-1	2021-08-10	2021.08.27.
200	도근점	6085	지역	148646.56	274638.79	서면 작장리 923-36	2021-08-10	2021.08.27.
201	도근점	6087	지역	146546.62	275796.49	서면 서상리 1640-56	2021-08-10	2021.08.27.
202	도근점	6097	지역	146026.84	278397.37	서면 대정리 1769	2021-08-10	2021.08.27.
203	도근점	6102	지역	150136.26	274863.38	서면 남상리 1164-16	2021-08-11	2021.08.27.
204	도근점	6103	지역	150089.15	275187.4	서면 남상리 189-5	2021-08-11	2021.08.27.
205	도근점	6104	지역	150019.05	275501.52	서면 남상리 산157	2021-08-11	2021.08.27.
206	도근점	6105	지역	150006.87	275657.63	서면 남상리 산153	2021-08-11	2021.08.27.
207	도근점	6106	지역	150078.86	275779.77	서면 남상리 산153	2021-08-11	2021.08.27.
208	도근점	6109	지역	149800.13	275745.47	서면 남상리 산183	2021-08-11	2021.08.27.
209	도근점	6114	지역	150030.42	275171.46	서면 남상리 산175	2021-08-11	2021.08.27.
210	도근점	6115	지역	149930.3	275151.84	서면 남상리 산173-4	2021-08-11	2021.08.27.
211	도근점	6116	지역	149934.39	274951.3	서면 남상리 1252-2	2021-08-11	2021.08.27.
212	도근점	6117	지역	146696.6	279481.54	서면 대정리 543-5	2021-08-10	2021.08.27.
213	도근점	6119	지역	146628.43	279980.75	서면 대정리 508	2021-08-10	2021.08.27.
214	도근점	6122	지역	146061.83	277156.43	서면 서상리 466	2021-08-10	2021.08.27.
215	도근점	6128	지역	149016.71	274810.24	서면 작장리 1055-7	2021-08-10	2021.08.27.
216	도근점	6129	지역	149058.98	274700.02	서면 작장리 1064	2021-08-10	2021.08.27.
217	도근점	6130	지역	148985.18	274630.78	서면 작장리 1066	2021-08-10	2021.08.27.
218	도근점	6131	지역	149054.32	274556.81	서면 작장리 1529	2021-08-10	2021.08.27.
219	도근점	6135	지역	148841.67	274370.85	서면 작장리 1505-1	2021-08-10	2021.08.27.
220	도근점	6143	지역	148849.99	274898.68	서면 작장리 1120-1	2021-08-10	2021.08.27.
221	도근점	6150	지역	151825.32	274998.8	서면 노구리 1076-3	2021-08-11	2021.08.27.
222	도근점	6157	지역	146461.26	279204.85	서면 대정리 672-4	2021-08-10	2021.08.27.
223	도근점	6158	지역	146163.79	279180.82	서면 대정리 634	2021-08-10	2021.08.27.
224	도근점	6163	지역	146639.34	279827.88	서면 대정리 471	2021-08-10	2021.08.27.
225	도근점	6164	지역	153255.4	277998.83	서면 중현리 35-1	2021-08-11	2021.08.27.
226	도근점	6172	지역	153406.63	276986.13	서면 중현리 981-2	2021-08-11	2021.08.27.
227	도근점	6173	지역	153207.63	276978.29	서면 중현리 1008-1	2021-08-11	2021.08.27.
228	도근점	6174	지역	146156.53	276601.23	서면 서상리 555	2021-08-10	2021.08.27.
229	도근점	6176	지역	146388.98	276499.71	서면 서상리 1442	2021-08-10	2021.08.27.
230	도근점	6182	지역	146868.12	277257.3	서면 서호리 210	2021-08-11	2021.08.27.
231	도근점	6185	지역	154010.22	275671.8	서면 정포 1076-9	2021-08-11	2021.08.27.

연번	종류	기준점명	좌표구분	X좌표	Y좌표	상세주소	조사날짜	폐기일자
232	도근점	6191	지역	152954.06	275512.6	서면 노구 1419	2021-08-11	2021.08.27.
233	도근점	6196	지역	152314.41	274902.27	서면 노구 856	2021-08-11	2021.08.27.
234	도근점	6211	지역	151284.49	274576.42	서면 남상 559-1	2021-08-11	2021.08.27.
235	도근점	6212	지역	151210.01	274950.07	서면 남상 산21-1	2021-08-11	2021.08.27.
236	도근점	6213	지역	151254.09	274985.77	서면 남상 541-40	2021-08-11	2021.08.27.
237	도근점	6214	지역	151374.76	274740.78	서면 노구 1273-5	2021-08-11	2021.08.27.
238	도근점	6216	지역	146129.24	276016.02	서면 서상 1316-7	2021-08-10	2021.08.27.
239	도근점	6225	지역	147275.88	275164.47	서면 작장 213	2021-08-10	2021.08.27.
240	도근점	6226	지역	147338.13	275133.65	서면 작장 212	2021-08-10	2021.08.27.
241	도근점	6227	지역	147401.02	275095.27	서면 작장 254	2021-08-10	2021.08.27.
242	도근점	6228	지역	147525.66	275012.07	서면 작장 257	2021-08-10	2021.08.27.
243	도근점	6234	지역	148457.69	274713.5	서면 작장 819	2021-08-10	2021.08.27.
244	도근점	6239	지역	146806.07	275802.52	서면 서상 1600-2	2021-08-10	2021.08.27.
245	도근점	6247	지역	151186.82	274497.88	서면 남상 1588-2	2021-08-11	2021.08.27.
246	도근점	6248	지역	151154.25	274391.11	서면 남상 1591-1	2021-08-11	2021.08.27.
247	도근점	6249	지역	151209.54	274168.21	서면 남상 1606-2	2021-08-11	2021.08.27.
248	도근점	6252	지역	151184.86	273958.59	서면 남상 1791-8	2021-08-11	2021.08.27.
249	도근점	6253	지역	151157.41	273876.97	서면 남상 1791-7	2021-08-11	2021.08.27.
250	도근점	6258	지역	151008.62	274681.78	서면 남상 672-2	2021-08-11	2021.08.27.
251	도근점	6259	지역	150895.35	274667.2	서면 남상 680-1	2021-08-11	2021.08.27.
252	도근점	6260	지역	150812.07	274681.98	서면 남상 723-1	2021-08-11	2021.08.27.
253	도근점	6264	지역	150309.7	274782.47	서면 남상 1047-4	2021-08-11	2021.08.27.
254	도근점	6265	지역	151437.45	275762.32	서면 노구 113-7	2021-08-11	2021.08.27.
255	도근점	6267	지역	153865.99	276394.59	서면 정포 669-4	2021-08-11	2021.08.27.
256	도근점	6273	지역	152618.54	274945.21	서면 노구 434-11	2021-08-11	2021.08.27.
257	도근점	6280	지역	153866.09	276020.24	서면 정포 1077-28	2021-08-11	2021.08.27.
258	도근점	6286	지역	152943.99	278554.94	서면 중현 22-2	2021-08-11	2021.08.27.
259	도근점	6287	지역	153018.57	275921.69	서면 중현 1428	2021-08-11	2021.08.27.

남해군 고시 제2021 - 132호

남해군관리계획(독일마을·원예예술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경상남도고시 제2003-339호(2003.12.10.)로 최초고시되고, 남해군고시 제 2019-162호(2019.11.28.)로 변경 고시된 남해군관리계획(독일마을·원예예술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 32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및 문화관광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8월 31일

남 해 군 수

1. 위 치 :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봉화리, 동천리 일원
2. 면 적 : A=273,532.8→273466.8㎡(감 66.0㎡)
3. 남해군관리계획(독일마을·원예예술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 조서 : 붙임 참조
4. 관계도면 및 시행지침 : 실음생략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열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남해군관리계획(독일마을·원예예술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변경)

2.1.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8	독일마을·원예예술촌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삼동면 물건리 2572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273,532.8	감) 66.0	273,466.8	경상남도고시 제2003-339호 (2003.12.10.)	경미한 변경

2.2.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	독일마을·원예예술촌 개발진흥지구	◦면적 축소 -A=273,532.8→273,466.8㎡(감 66.0㎡)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축소에 따른 개발진흥지구 면적 축소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3.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8	독일마을·원예예술촌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봉화리, 동천리 일원	273,532.8	감) 66.0	273,466.8	경상남도고시 제2003-339호 (2003.12.10.)	

3.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	독일마을·원예예술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축소 -A=273,532.8→273,466.8㎡(감 66.0㎡)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축소

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4.1.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73,532.8	감) 66.0	273,466.8	100.0	
관광·휴양시설용지	86,797.9	증) 206.3	87,004.2	31.8	
동천문화촌(전통 공예촌)	4,144.0	-	4,144.0	1.5	I-1
원예마을(예술인 마을)	17,856.0	-	17,856.0	6.5	I-2
문화관(전통문화의 거리)	8,295.0	-	8,295.0	3.0	I-3
식물원	3,010.0	-	3,010.0	1.1	I-4
독일교포 정착마을	38,815.9	감) 455.1	38,360.8	14.0	I-5, I-7
숙박시설(독일문화센터)	14,677.0	증) 661.4	15,338.4	5.6	I-6
공공시설용지	42,790.1	감) 206.3	42,583.8	15.6	
도로	22,107.0	-	22,107.0	8.1	II-1
주차장	14,093.6	-	14,093.6	5.2	II-2
관리사 및 화장실	1,616.6	-	1,616.6	0.6	II-3
광장	2,544.1	-	2,544.1	0.9	II-4
소공원	738.8	감) 206.3	532.5	0.2	II-5
하수처리장	567.0	-	567.0	0.2	II-6
배수지	882.0	-	882.0	0.3	II-7
가압장	241.0	-	241.0	0.1	II-8
녹지용지	143,944.8	감) 66.0	143,878.8	52.6	
보전녹지	127,960.8	-	127,960.8	46.8	III-1
녹지	15,984.0	감) 66.0	15,918.0	5.8	III-2

4.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

4.2.1. 교통시설 (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합계	3	1,579	12,921	-	-	-	1	506	4,555	2	1,077	8,134
소로	3	1,579	12,921	-	-	-	1	506	4,555	2	1,077	8,134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2	1	9	국지 도로	506	물건리 1210	봉화리 2573	일반 도로		경상남도고시 제2003-339호 (2003.12.10.)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320	봉화리 2574	봉화리 2627	일반 도로		경상남도고시 제2003-339호 (2003.12.10.)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757	봉화리 2626	동천리 산395-1	일반 도로		경상남도고시 제2003-339호 (2003.12.10.)	

나.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1	삼동면 봉화리 2572번지	5,194.0	-	5,194.0	경상남도고시 제2003-339호 (2003.12.10.)	
기정	2	주차장2	삼동면 봉화리 2613번지	7,312.0	-	7,312.0	경상남도고시 제2003-339호 (2003.12.10.)	
기정	4	주차장4	삼동면 물건리 1179번지 일원	1,587.6	-	1,587.6	경상남도고시 제2003-339호 (2003.12.10.)	

4.2.2. 공간시설 (변경)

가. 광장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광장	교통 광장	상동면 동천리 2099번지 일원	2,544.1	-	2,544.1	경상남도고시 제2003-339호 (2003.12.10.)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공원	◦면적 축소 -A=738.8→532.5m ² (감 206.3m ²)	◦일부 공원 부지의 토지이용현황을 반영한 면적 축소

4.2.3.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가.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2	동천배수지	삼동면 동천리 산398-2번지 일원	882.0	-	882.0	남해군고시 제2012-43호 (2012.05.17.)	
기정	29	동천가압장	삼동면 동천리 산398-2번지 일원	241.0	-	241.0	남해군고시 제2012-43호 (2012.05.17.)	

4.2.4.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가.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하수도	삼동면 물건리 245번지	567.0	-	567.0	경상남도고시 제2003-339호 (2003.12.10.)	

4.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

4.3.1. 관광·휴양시설용지 (변경)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I	86,797.9	증)186.8	86,984.7	합계			86,797.9	증) 206.3	87,004.2	
				I-1	I-1	삼동면 동천리 1000-2번지 일원	4,144.0	-	4,144.0	동천 문화촌
				I-2	I-2	삼동면 동천리 산400-5번지 일원	17,856.0	-	17,856.0	원에 마을
				I-3	I-3	삼동면 봉화리 2611번지 일원	8,295.0	-	8,295.0	문화관
				I-4	I-4	삼동면 동천리 산398-2번지 일원	3,010.0	-	3,010.0	식물원
				I-5	I-5	삼동면 물건리 1136번지 일원	38,815.9	감)11,331.3	27,484.6	독일 마을
				I-6	I-6	삼동면 물건리 1154번지 일원	14,677.0	증) 661.4	15,338.4	숙박 시설
				I-5	I-7	삼동면 물건리 1170번지 일원	-	증)10,876.2	10,876.2	독일 마을

4.3.2. 공공시설용지 (변경)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II	42,790.1	감)186.8	42,603.3	합계			42,790.1	감) 206.3	42,583.8	
				II-1	II-1	삼동면 동천리 산398-2번지 일원	22,107.0	-	22,107.0	도로
				II-2	II-2	삼동면 물건리 1179번지 일원	14,093.6	-	14,093.6	주차장
				II-3	II-3	삼동면 봉화리 2571번지 일원	1,616.6	-	1,616.6	관리소, 화장실
				II-4	II-4	삼동면 동천리 2099번지 일원	2,544.1	-	2,544.1	교통 광장
				II-5	II-5	삼동면 물건리 1203번지 일원	738.8	감) 206.3	532.5	소공원
				II-6	II-6	삼동면 물건리 245번지 일원	567.0	-	567.0	하수 처리장
				II-7	II-7	삼동면 동천리 산398-2번지 일원	882.0	-	882.0	배수지
				II-8	II-8	삼동면 동천리 산398-2번지 일원	241.0	-	241.0	가압장

4.3.3. 녹지용지 (변경)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III	143,944.8	감) 66	143,878.8	합계			143,944.8	감) 66.0	143,878.8	
				III-1	III-1	삼동면 동천리 산398-2번지 일원	127,960.8	-	127,960.8	보전 녹지
				III-2	III-2	삼동면 물건리 1179번지 일원	15,984.0	감) 66.0	15,918.0	녹지

4.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

4.4.1. 관광·휴양시설용지 (변경)

획지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변경없음)		
기정	변경					
I-1	I-1	삼동면 동천리 1000-2번지 일원	용도	지정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4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권장 용도	-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	최고 한도	○ 2층 이하	
				최저 한도	-	
					형태	-
					색채	○ 원색지양
			I-2	I-2	삼동면 동천리 산400-5번지 일원	용도
권장 용도	-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	최고 한도	○ 2층 이하				
	최저 한도	-				
		형태				-
		색채				○ 원색지양

획지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변경없음)		
기정	변경					
I-3	I-3	삼동면 봉화리 2611번지 일원	용도	지정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4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권장 용도	○ 원예학교, 식당, 카페, 기념품판매, 강의실, 영상실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	최고 한도	○ 2층 이하	
				최저 한도	-	
			형태	-		
			색채	○ 원색지양		
I-4	I-4	삼동면 봉화리 산398-2번지 일원	용도	지정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마목의 동·식물원	
				권장 용도	○ 식물원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	최고 한도	○ 2층 이하	
				최저 한도	-	
			형태	-		
			색채	○ 원색지양		
I-6	I-6	삼동면 물건리 1154번지 일원	용도	지정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과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3·4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권장 용도	-	
				불허 용도	-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최고 한도	○ 4층 이하	
				최저 한도	-	
			형태	-		
			색채	○ 원색지양		

획지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I-5	I-5	삼동면 물건리 1136번지 일원	용도	지정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소매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너목 제조업소	
				허용 용도	○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독일(산) 기념품 및 선물용품점, 서점 ○ 소규모 제조업소(독일 관련 공방, 소시지, 소품, 가죽, 나무, 악기, 도자기 등) ○ 하나의 대지 내에서 1개 동의 건축물 내에서 1개 층에 한하여 상업용도의 건축행위 허용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가목의 소매점 중 “편의점”	
					건폐율	○ 40% 이하	○ 4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 80% 이하
			높이	최고 한도	○ 3층 이하	○ 3층 이하(15m 이하)	
				최저 한도	-	-	
					형태	-	○ 독일의 전통적인 양식으로 건축 ○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하고 경사각 5/10 이상으로 설치 ○ 지붕재료는 적색계통의 기와를 사용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설치
					색채	○ 원색지양	○ 원색지양

획지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I-5	I-7	삼동면 물건리 1170번지 일원	용도	지정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소매점, 나목 휴게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자목 일반음식점
				허용 용도	○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독일(산) 기념품 및 선물용품점 ○ 음식점 : 독일마을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독일 음식 판매 ○ 하나의 대지 내에서 1개 동의 건축물 내에서 1개 층에 한하여 상업용도의 건축행위 허용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가목의 소매점 중 “편의점” 나. 나목의 휴게음식점 중 「식품위생법」에 의해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영업의 종류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8호 식품접객업 가목의 휴게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해당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형태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것 가. 일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나. 중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다. 자목의 일반음식점 중 식품위생법에 의해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영업의 종류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식품접객업 나목의 일반음식점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해당되는 것
			건폐율		○ 40% 이하	○ 4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 80% 이하
			높이	최고 한도	○ 3층 이하	○ 3층 이하(15m 이하)
				최저 한도	-	-
			형태		-	○ 독일의 전통적인 양식으로 건축 ○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하고 경사각 5/10 이상으로 설치 ○ 지붕재료는 적색계통의 기와를 사용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설치
			색채		○ 원색지양	○ 원색지양

4.4.2. 공공시설용지 (변경없음)

획지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II-1	삼동면 봉화리 282-1번지 일원	용도	지정 용도	○ 도로
			권장 용도	-
			불허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최고 한도	-
			최저 한도	-
		색채		-
II-2	삼동면 동천리 산398-2번지 일원	용도	지정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권장 용도	○ 노외주차장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 이하
		용적률		○ 10% 이하
		높이	최고 한도	-
			최저 한도	-
		색채		○ 원색지양
II-3	삼동면 봉화리 2571번지 일원	용도	지정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4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권장 용도	○ 관리사 및 화장실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	최고 한도	○ 2층 이하
			최저 한도	-
		색채		○ 원색지양

획지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II-4	삼동면 동천리 2099번지 일원	용도	지정 용도	<input type="radio"/> 교통광장
			권장 용도	-
			불허 용도	<input type="radio"/>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input type="radio"/> 10% 이하
		용적률		<input type="radio"/> 10% 이하
		높이	최고 한도	-
			최저 한도	-
색채		<input type="radio"/> 원색지양		
II-5	삼동면 물건리 1203번지 일원	용도	지정 용도	<input type="radio"/> 소공원
			권장 용도	-
			불허 용도	<input type="radio"/>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input type="radio"/> 10% 이하
		용적률		<input type="radio"/> 10% 이하
		높이	최고 한도	-
			최저 한도	-
색채		<input type="radio"/> 원색지양		
II-6	삼동면 물건리 245번지 일원	용도	지정 용도	<input type="radio"/> 하수처리장
			권장 용도	-
			불허 용도	<input type="radio"/>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input type="radio"/> 10% 이하
		용적률		<input type="radio"/> 10% 이하
		높이	최고 한도	-
			최저 한도	-
색채		<input type="radio"/> 원색지양		
II-7	삼동면 물건리 산398-2번지 일원	용도	지정 용도	<input type="radio"/> 수도공급설비 중 배수지
			권장 용도	-
			불허 용도	<input type="radio"/>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input type="radio"/> 10% 이하
		용적률		<input type="radio"/> 10% 이하
		높이	최고 한도	-
			최저 한도	-
색채		<input type="radio"/> 원색지양		

획지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II-8	삼동면 물건리 산398-2번지 일원	용도	지정 용도	○ 수도공급설비 중 가압장	
			권장 용도	-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 이하
				용적률	○ 10% 이하
		높이	최고 한도	-	
			최저 한도	-	
				색채	○ 원색지양

4.4.3. 녹지용지 (변경없음)

획지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III-1	삼동면 동천리 398-2번지 일원	용도	지정 용도	○ 보전녹지	
			권장 용도	-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 이하
				용적률	○ 10% 이하
		높이	최고 한도	-	
			최저 한도	-	
				색채	○ 원색지양
III-2	삼동면 물건리 1224번지 일원	용도	지정 용도	○ 녹지	
			권장 용도	-	
			불허 용도	-	
				건폐율	○ 10% 이하
				용적률	○ 10% 이하
		높이	최고 한도	-	
			최저 한도	-	
				색채	○ 원색지양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1 - 1172호

2021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공고

경상남도과 남해군에서는 청년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보증 사고 예방을 위한 “2021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 8. 23.

남 해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범사업)
- 사 업 비: 770천원 (도비 4,230천원, 시비 9,870천원)
- 사 업 량: 5가구
- 사업기간: 2021. 8. 23.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2. 지원 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청년·신혼부부 임차인
 - 청년: 만 19세 ~ 만 39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 신혼부부: 나이 무관,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기간)
 - 남해군 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청년·신혼부부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19. 10월 ~ '21. 12월 (보증 갱신일 포함)
- * 미가입자는 가입 후 신청 가능

- * 보증기관별 보증료 가입조건이 상이하므로 해당기관 확인 후 가입한 자
- ※ 보증가입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위탁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NH농협·경남 등)

3. 지원제외 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신청일 기준)
- 법인사업자인 임차인
- 그 밖에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청 및 지원절차

- 신청기간: 2021. 8. 23.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절차: 신청·접수(신청인→읍·면)⇨대상자 결정(군)⇨통보·지급(군→신청인)

5. 선정기준

-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순으로 순차적 지원
- 지원 신청금액이 같은 날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접수순으로 선정
-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지원 불가
- 2021년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의한 소득 판정(기혼자는 부부합산)
 - '21년 1~3월까지 3개월 평균액 또는 '21년 3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
 - 소득판정 기준표 [2021년 기준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소득기준(원/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290,000	113,568	107,552	114,709
2인	5,559,000	191,093	200,980	194,212
3인	7,171,000	246,992	271,376	252,295
4인	8,777,000	308,297	341,915	321,769
5인	10,363,000	380,152	420,252	414,255
6인	11,931,000	414,255	456,308	449,388
7인	13,495,000	486,115	531,814	540,144

-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 가구원수: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수 기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확인)
-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관련
 - 기혼자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맞벌이 가구일 경우 합산 산정)
 - 신청인 및 배우자 외 건강보험료 별도 합산하지 않음
 - 신청인이 미혼의 피부양자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에 의한 주택 소유여부 판정
 - 기혼자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과세연도 2020~2021년 전국 자치단체 기준 재산세(주택) 기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세무과에서 방문발급만 가능하므로 1인 방문 시 배우자의 위임장, 신분증, 도장 지참 필요

6. 신청서류

신 청 서 류		발 행 처
①	신청서 및 정보 제공동의서	남해군 홈페이지 공고 및 접수처(읍·면사무소)
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가입기관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④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020~2021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정보24(인터넷 발급)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재무과
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피부양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1년 1~3월 고지금액 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발급가능)
⑦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⑧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일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발급가능)
⑨	주민등록등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발급가능)

※ ⑥, ⑦ 관련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미 혼	가입자	○	○	×	
	피부양자	○(부양자)	○(부양자)	○	
기 혼	외벌이	가입자	○	×	
		피부양자	×	×	
	맞벌이	가입자	○	○	×
		가입자	○	○	×

7. 기타사항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증료를 지원받은 경우 회수 조치합니다.
- 보증료를 지원 받은 자 중에서 연말정산 등에서 공제를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소득관정을 위하여 신청 이후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행정팀 (☎ 860-3490)

[별지 제1호서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주 택 현 황	소 재 지		소 유 자	(남, 여)
	전세보증금		면적(m ²)	
	주택종류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공동주택	계약기간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신청금액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위 동의 미체크시 신청인 제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1부 7.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8. 혼인관계증명서 1부.(기혼자) 	주민등록표 등본

남해군 공고 제2021 - 1175호

2021년도 전입세대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농어촌의 노후·불량한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남해군의 인구유입을 도모하고자 「전입세대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남 해 군 수

□ 사업개요

○ 사업물량 : 20세대

○ 사 업 비

(단위 : 천원)

계	준비(100%)	비 고
40,000	40,000	세대 당 200만원 한도,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범위

- 창호나 도배, 장판, 화장실 개보수 등 주거 관련 부분의 공사에 한함

※ 창고, 대문, 담장 등 거주와 관련 없는 수선, 가구 및 집기(싱크대) 구입 및 설치 제외

□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2년 이내인 세대에 한함.)

- 전입신고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착을 위하여 관내 빈집을 매매 또는 임차하여 수리하고자 하는 전입세의 세대주

※ 수리 후 전입신고 가능 (전입신고 완료 후 보조금 지급)

○ 지원요건

- ▶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주택에 한함(아파트, 사택, 고택 등 제외)
- ▶ 단독세대를 구성한 세대주만 신청 가능(세대원 신청 불가)
- ▶ 세대주 소유의 주택 및 세대원 가족명의(배우자, 자녀 등) 주택은 가능
- ▶ 임대주택일 경우 임대차계약서(3년 특약) 및 소유자의 수선동의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사업 신청 전 수선을 완료 한 세대
- 타시·군·구에서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세대
- 철거, 신축 및 증축은 제외
- 불법건축물,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 사망 후 미상속 주택 제외

□ 신청 안내 및 자격 검토

-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 사업기간 : 2021. 12월. 31일 , 연도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지원 자격 주요 검토 사항

구 분	검 토 사 항	확인서류
신청자격	세대주(주민등록등본 기준)	주민등록등본
이주기간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이상 타 시·군·구 거주	주민등록초본
거주기간	남해군 거주기간 3개월 이상, 실제 거주자	주민등록초본 현지조사
전 입 가족수	세대주 포함 가족 2인 이상(동거인은 불가)	주민등록등본
주택확인	세대주 소유 주택 :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함께 전입하는)명의 인정,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3년이상) 및 수선 동의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현지조사

□ 사후 관리

- 교부 결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90일 이내에 사업 미착수 등 교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교부 결정 취소
-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전입신고 완료 및 실거주 3개월 이내에 타 지역 전출 등 지원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대상자의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지원가구에 대한 거주실태 등 연1회 이상 점검

- 붙임 1. 남해군 인구증대시책지원 신청서 1부.
2. 전입세대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수선 계획서 1부.
3. 전입세대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수선 동의서 1부.
4. 성실의무각서 1부.
5. 개인정보 등 이용제공 동의서 1부. 끝.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시책 지원 대상의 적정성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주택, 핸드폰), 지급처(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전입가족현황(성명, 생년월일, 전입일자), 출산장려시책지원(신생아성명, 생년월일, 관계, 자녀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일로부터 5년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남해군에서 수행하는 인구증대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지연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읍·면장 귀하

확인기관	확 인 내 용		해당여부	확인자
읍 · 면 주 민 등 록 담당공무원	전 입 지 원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 3조제3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직 성명 (인)
	출 산 장 려 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 3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		
	셋째아 이상 영 · 유 아 양 육 수 당 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 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		
	셋째아 이상 고 등 학 교 학 비 지 원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 3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		
	전 입 학 생 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 3조제4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 · 면장 (인)

[붙임 2]

2021년 전입세대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수선계획서

주택위치	(지번) (도로명)	주거상태	자가/전세/월세/기타(무상임대 등)
수선계획	예시 : 도배/장판/화장실(타일,변기)/ 등 주택내부 수리		
위치도			
건물현황 (외부전경)	*주택 외부 전경과 내부 각각 첨부		

<p>건물현황 (내부)</p>	<p>*주택수리 대상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사진 첨부</p>
<p>건물현황 (내부)</p>	<p>*주택수리 대상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사진 첨부</p>

[붙임 3]

전입세대 빈집 수선 동의서 (소유자)

전입세대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현황

주택 소재지	신청인(임차인)	연락처	비 고

상기 본인은 위 주택의 현 소유자로서 임차인이 임차한 본인의 주택에 대하여 2021 전입세대 빈집 수리비 지원사업에 신청함에 동의합니다.

임대인 : (인)
임대인 연락처 :

2021년 월 일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공고 제2021 - 1176호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2. 개정이유

가. 생활밀착형 요금인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나. 소규모수도시설이 용수량 및 수질관리 어려움으로 지방상수도 전환 시 급수비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다. 사용료 미납에 따른 가산금을 연체일수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라. 미납 및 과오납된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를 구체적으로 표현

마. 그 밖의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3. 주요내용

- 가. 마을단위별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포함)를 지방상수도로 전환 시 옥외와 옥내를 연결하는 급수공사비 지원(안 11조)
- 바. 사용료 미납에 따른 연체금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 도입(안 제35조)
- 사. 미납 및 과오납된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를 구체적으로 표현(안 제51조)

4. 의견제출

-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의견 제출처 : 남해군수(환경물관리단)
 -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우52425)
 - 전 화 : 055-860-3323, 팩스 : 055-860-37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환경물관리단 상수도팀(전화 055-860-33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남해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20.>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갈라져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 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5.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6. “흡수정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의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도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중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일부 파손된 급수시설을 보수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22., 2015. 10. 2.>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의 장치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0. 22.>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때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같은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자를 지정하여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자
-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 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드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수도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9. 4. 4.>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0. 22.>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 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대행업자는 착공사항을 군수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2.>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

제10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공무원은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급수공사비는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노후계량기의 교체 및 급수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개조, 수선, 철거공사 시의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에 계량기까지로 한다)급수공사비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자가주택의 옥외 급수공사비와 옥외에서 옥내급수관까지의 연결 공사비
- 3.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에 따른 기존 주택의 옥외 급수공사비와 옥외에서 옥내급수관까지의 연결 공사비(단 사업완료 후 신청은 제외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군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5. 10. 2.>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주 계량기와 따로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까지의 수도시설 중 계량기만 군에서 관리하고 그 외

시설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며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누수 등에 대해서도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 <개정 2015. 10. 2.>

제13조(급수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은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남거나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0. 2.>

제14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설비와 사설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보조계량기 설치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2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23.>

1. 공설공용 및 상수도사업 사용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2. 제26조제3항에 따라 폐전된 급수전을 같은 장소에 부활시킬 경우
3. 짧은 기간 급수를 목적으로 가설하는 임시사용 급수시설
4. 「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의 경우 시설분담금은 세대별 계량기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각 호별로 구분·산정하여 합산 부과한다. 다만, 급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산정하되 이미 설치된 급수설비의 개수 및 구경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③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제14조의2삭 제 <2020. 6. 23.>

제14조의3삭 제 <2020. 6. 23.>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제6조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산출방법, 납부 등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

제16조(흡수정의 장치 설치) 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파손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익은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② 급수공사 하자책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0. 2.>

제19조(원상복구) ① 군수는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도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변제할 경우에는 군에서 현실당가대로 산출한 공사금액에 따르며 원상복구 시는 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소요비용은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발생시 누수량을 추정하여 제28조에 따라 징수액을 결정하여 누수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급수

제20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

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 4. 제31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 5. 그 밖에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22조(사설 소화용 급수전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 급수전은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려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며,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2.>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물건의 적치·시설물의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4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종전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나 공매 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0. 2.>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6. 12. 30.>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은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때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0. 2.>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따른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급수재개신청이 없을 때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4장 요금 및 수수료

제27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8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상수도 요금 산정기준에 따르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라 급수를 정지하는 경우
2. 제26조제2항에 따라 급수 중지중인 경우
3. 제43조에 따라 정수처분을 한 경우

② 제3조의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업소의 요금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내 같은 종류 업소의 평균사용량을 해당 업소의 사용량으로 하여 계량기에 따른 상수도 요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 10. 2.>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제28조에 따른 요금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확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업종구분은 높은 효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효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하여진 날(이하 “정례일”이라 한다)에 수도계량기에서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수도사용요금을 조정하며, 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③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같은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때
-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 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 단일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그 이상의 양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5. 10. 2.>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수도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이 남거나 부족할 때에는 반환이나 추가 징수하거나 다음 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②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요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 4. 4.>

제34조(구경별 기본요금) ① 구경별 기본요금은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급수설비는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15. 10. 2.>

② 제1항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별표 2에 따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5조(가산금) ① 군수는 요금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미납요금×(3/100)×12개월×(연체일수/365)
-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체납액의 100분의 3

제36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고지한다. 다만, 수도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4.>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포함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4.>

③ 미납액누계를 해당 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제37조(임시급수) ①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에만 임시급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 수량을 계산하여 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정산하되 남거나 부족한 금액은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5. 10. 2.>

제38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군수는 급수구역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와 상관없이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 사용 수량을 계산하여 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9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 1.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 가. 급수관 구경 40mm 미만: 2,000원
 - 나. 급수관 구경 40mm 이상: 4,000원
- 2. 준공검사 수수료
 - 가. 급수관 구경 40mm 미만: 2,000원
 - 나. 급수관 구경 40mm 이상: 4,000원
- 3.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 가. 급수관 구경 40mm 미만: 2,000원
 - 나. 급수관 구경 40mm 이상: 4,000원

- 4.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
 - 가. 급수관 구경 40mm 미만: 1,000원
 - 나. 급수관 구경 40mm 이상: 2,000원
- 5.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 가. 급수관 구경 40mm 미만: 2,000원
 - 나. 급수관 구경 40mm 이상: 4,000원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4., 2020. 6. 23.>

-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경감기간은 최대 5개월까지로 하며, 나목의 경감대상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정한다.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사용요금의 50% 이내
 -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용요금의 50% 이내
- 4. 그 밖에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한 감면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19. 4. 4., 2019. 6. 18., 2020. 6. 23.>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주
-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 5. 남해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6. 65세 이상 단독수용가
- 7. 수원지 인접 마을
-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금과 수수료의 감면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

제5장 관리

제41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

수설비,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의 장치 등의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급수설비의 개수 또는 구경변경 신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3조(급수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급수를 정지(停止)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1. 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조례에 규정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사실 소화용 급수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합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 된 급수전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0. 삭제 <2010. 10. 22.>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2.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4조(포상금 지급) ①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1. 공무원: 과태료 처분금액의 10퍼센트
2. 일반인: 과태료 처분금액의 30퍼센트

②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었거나 재판에 따라 그 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45조(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제46조(과태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

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0. 2.>

제47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게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48조(수도계량기 점검 등의 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고지서 송달 등 과징 업무의 일부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업무처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이의신청) ① 요금과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20. 9. 8.>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0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그 밖에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4. 4.>

제51조(소멸시효)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1. 미납된 요금 및 수수료 : 3년
- 2. 과오납된 요금 및 수수료 : 5년

제52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읍·면장(상수도 관련 사업소가 설치되는 경우 사업소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 1.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승인
- 2. 제7조에 따른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 3. 제8조에 따른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 4.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시행
- 5. 제10조에 따른 준공검사 등

6. 제13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의 선납
7.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
8. 제15조에 따른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9. 제16조에 따른 흡수정의 장치 설치
10. 제17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11.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12. 제21조에 따른 신고
13. 제25조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4. 제26조에 따른 급수중지와 폐전
15. 제27조에 따른 요금의 징수
16. 제29조에 따른 업종의 구분
17. 제30조에 따른 요금의 조정
18. 제31조에 따른 사용수량의 인정
19. 제32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20. 제33조에 따른 납기와 징수방법
21. 제35조에 따른 가산금
22. 제36조에 따른 납부고지
23. 제37조에 따른 임시급수
24. 제38조에 따른 운반급수와 요금
25. 제39조에 따른 수수료
26. 제40조에 따른 요금 등의 감면
27. 제41조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8. 제42조에 따른 급수표지의 교부
29. 제43조에 따른 급수정수처분
30. 제46조에 따른 과태료
31. 제47조에 따른 급수설비의 철거
32. 제48조에 따른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33. 제49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5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

남해군 공고 제2021 - 1180호

남해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2. 제정이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적인 성과관리 체제의 구축을 통해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와 군정 운영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안 제1조~제2조: 목적, 정의
- 나. 안 제3조~제4조: 성과관리·평가의 원칙 및 대상
- 다. 안 제5조: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의 수립
- 라. 안 제6조: 성과평가단 운영
 - 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평가단 구성·운영
- 마. 안 제7조~제8조: 평가의 종류(정기/수시)
- 바. 안 제9조~제15조: 성과평가 운영 및 활용
- 사. 안 제16조~제23조: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1년 9월 13일까지(20일간)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30, 남해군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성과담당관 성과관리팀

2) 연락처 : 전화 055-860-3073, 팩스 055-860-3703

이메일 hijin0403@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기획성과담당관 성과관리팀 (☎ 055-860-31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남해군정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정 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성과관리와 평가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성과관리”란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관의 임무, 중기·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효과성·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평가”란 군정운영에 관련된 정책·사업·업무(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군정의 성과와 정책품질 및 군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③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성과관리 및 평가 대상) 성과관리 및 평가의 대상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 부서와 기관으로 하되, 의회사무과는 제외한다.

제5조(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당해 연도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 3. 군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 4. 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5.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6.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등

② 각 부서(기관)의 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객관적·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관리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변경은 그 사유와 근거 자료를 제시한 각 부서(기관)장의 요청에 의하여 총괄부서에서 종합·조정한다.

제6조(성과평가단 운영) ① 군수는 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선정된 공무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및 난이도 평가
- 2.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도에 대한 외생변수 및 노력도 등 평가
- 3. 정량자료 검증
- 4.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 등에 대한 평가

④ 총괄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에서는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종합평가에서는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수시평가) ①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한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시평가는 현장 확인과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9조(군민만족도평가) 군수는 정책등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군민만족

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평가를 위해 총괄부서는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평가 관련 자료·서류·의견 등의 제출 요청
-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 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에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2조(성과관련 업무 등의 용역) ① 군수는 대내·외 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실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실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군수는 평가의 결과를 인사, 교육,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직원에게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그 밖의 인사 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는 근무평정 시 근무평정자 및 확인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은 평가결과 부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평가계획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해당부서 및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총괄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남해군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평가결과의 공개) 군수는 평가결과를 남해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성과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평가대상 업무의 범위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 3.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 4.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장이 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군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 2. 군의 특성을 이해하고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 ①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② 간사는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하여 모든 업무를 보좌한다.

제21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제21조에 따라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남해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붙임1 관련법령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5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지행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주요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지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붙임2 폐지 자치법규

□ 「남해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의 업무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 등"이란 군 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
2. "평가"란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란 당해 연도 평가대상 사무로 선정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4. "수시평가"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 "부서의 장"이라 함은 군 본청의 실·과장과 사업소의 장을 말한다.

제3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평가

제4조(주요업무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요업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군수공약사업
2.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업무
3. 그 밖의 당면 현안업무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부서의 장은 제4조의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한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2월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해당 연도 업무 등의 평가 실시방향
2. 평가 대상업무
3. 평가시기

- 4.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6조(정기평가) ①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업무는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 종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종료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제7조(수시평가)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예산지원·포상 및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해군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장 평가위원회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5조 제2항의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 2.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3.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군의 실·과장 이상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일전 7일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정책기획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의 청취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민간인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1 - 1184호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2. 개정이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 취약가구가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신설 (안 제2조제3호)

- “방범시설” 용어 정의 신설

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조항 신설 (안 제12조)

- 방범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행·재정적 근거 마련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1년 9월 14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공공건축추진단

2). 연락처 : 전화 055-860-3243, 팩스 055-860-375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공공건축추진단 공공건축팀(전화 055-860-3243)으로 문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12조(행·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거노인, 여성 1인 및 장애인 가구 등 범죄에 취약한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신 설></p> <p><신 설></p>	<p>제2조(정의)-----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방법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문, 방법창, 방법용 망창, 방법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p> <p>제12조(행·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독거노인, 여성 1인 및 장애인 가구 등 범죄에 취약한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법시설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남해군 공고 제2021 - 1188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0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김환*	주소	남해군 이동면 무림로 **번길
	소하천명		정거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1113번지 일원(1027-7 인근)		
	면적	2㎡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1. 8. 30. ~ 2026. 8. 29.		
	목적 및 사유	배수관로매설(L=3m)		

남해군 공고 제2021 - 1210호

상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상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9. 8.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사업명	위치	사업량	기간	비고
상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상주면 상주리 산338-28번지 일원	사면정비 L = 1,640 m, H=20m	2021. 10.~ 2022. 12.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 : 남해군수

나)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3.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 개별통지문 발송 및 열람장소에 비치

가) 토 지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338-28번지 외 54필지 31,898㎡

나) 지장물건 :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 토지 등 세부내역은 붙임 조서 참조,

남해군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 고시공고)에서도 확인 가능함

4.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1. 9. 8. ~ 2021. 9. 27. (19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다) **이의신청** : 남해군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 보상담당으로 **서면제출**

5.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시기** : 2021년 6월~(추후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 실시 후 통보)
- 나)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방법으로 전액현금 지급(단, 압류 및 근저당은 토지소유자가 해제 후 계약체결 원칙)
- 다)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 ① **평가기관** :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시 3인)
 - ②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보상계획 열람공고⇒감정평가⇒보상금 산정⇒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
 ⇒협의(계약체결)⇒보상금 지급⇒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공탁(협의 불성립시)
 ⇒이의재결 또는 소송

- 마)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 바)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사)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 가) 열람결과 소유권·기타 권리관계 등이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상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폐문부재, 이사, 수령거부,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다)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방재복구팀(☎055-860-32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편입예정 토지조서 1부.

이 의 신 청 서

1. 제 목	상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보상계획에 대한 의견
--------	-----------------------------------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 대상 토지 또는 물건:
--------	----------------

4. 기 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남해군수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상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 대상토지 및 소유자

토 지 소재지	지목	편입 면적 (㎡)	소 유 자		날인 (인감)	전화번호 (자택및휴대폰)	비고
			성 명	주 소			

□ 추천 감정평가업자

법인명	수행지사	연락처	비 고

2021년 월 일

남해군수 귀하

※ 소유자 확인란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인감증명서 첨부)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편 입 용 지 조 서(1)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편입(m ²)	토지소유자		비고
	군	면	리	본	지			주소	성명	
1	남해	상주	상주	산338	28	임	1,942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3나길	박주*	
2	"	"	"	산338	19	도	363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3나길	박주*	
3	"	"	"	산338	32	임	1,982	(사정)	정세*	
4	"	"	"	산338	30	임	61	(사정)	정세*	
5	"	"	"	산338	18	도	285	남해군		
6	"	"	"	산338	31	임	514	경상남도 양산시 신기서길	정경*	
7	"	"	"	산338	16	도	78	남해군		
8	"	"	"	산337	3	도	141	남해군		
9	"	"	"	산337	5	임	1,535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정신*	
10	"	"	"	산325	5	임	2,57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오승*	
11	"	"	"	산325	3	도	230	남해군		
12	"	"	"	산325	1	도	241	남해군		
13	"	"	"	산326	9	도	833	부산광역시 금정구	박진*	
14	"	"	"	산326	11	도	33	남해군		
15	"	"	"	산327	11	임	1,117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김주*	
16	"	"	"	산327	7	도	114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김주*	
17	"	"	"	산327	13	임	505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김주*	
18	"	"	"	산327	10	임	688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최동*	
19	남해	상주	상주	산327	12	임	309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최동*	
20	"	"	"	산328	12	임	435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감계*	1/2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최귀*	1/2
21	"	"	"	산328	14	임	138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감계*	1/2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최귀*	1/2
22	"	"	"	산328	9	임	957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박수*	
23	"	"	"	산328	15	임	89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감계*	1/2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최귀*	1/2
24				산328	13	임	224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감계*	1/2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최귀*	1/2
25	"	"	"	산328	8	도	730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박수*	
26	"	"	"	산317	9	임	101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최상*	

편 입 용 지 조 서(2)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편입(m ²)	토지소유자		비고
	군	면	리	본	지			주소	성명	
27				산317	7	임	778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최상*	
28	"	"	"	산317	3	도	5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오태*	
29				산317	10	임	28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최성*	
30				산317	11	임	2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최성*	
31	"	"	"	산317	4	도	510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최성*	
32				산317	8	임	1,019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최성*	
33	남해	상주	상주	산312	18	임	1,70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도정동	김훈*	
34	"	"	"	산312	21	임	9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도정동	김훈*	
35	"	"	"	산312	22	임	42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도정동	김훈*	
36	"	"	"	산312	11	도	277	남해군		
37	"	"	"	산312	19	임	18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김정*	1/5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정춘*	1/5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김경*	1/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김성*	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김상*	1/5
38	"	"	"	산312	20	임	111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김정*	1/5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정춘*	1/5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김경*	1/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	김성*	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김상*	1/5
39	"	"	"	산312	17	임	3,037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김정*	1/5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정춘*	1/5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김경*	1/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	김성*	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김상*	1/5
40	남해	상주	상주	산312	10	도	690	남해군		
41	"	"	"	산307	8	임	17	부산광역시 남구 망미동	김상*	1/2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송일*	1/2
42	"	"	"	산307	9	임	25	부산광역시 남구 망미동	김상*	1/2

편 입 용 지 조 서(3)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편입(m ²)	토지소유자		비고
	군	면	리	본	지			주소	성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송일*	1/2
43	"	"	"	산307	7	임	767	부산광역시 남구 망미동	김상*	1/2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송일*	1/2
44	"	"	"	산307	4	도	791	부산광역시 남구 망미동	김상*	1/2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송일*	1/2
45	"	"	"	산307	6	도	276	부산광역시 남구 망미동	김상*	1/2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송일*	1/2
46	"	"	"	산305	5	임	80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전성*	
47	"	"	"	산305	2	도	937	남해군		
48	"	"	"	산305	1	임	98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이봉*	
49	"	"	"	산305	4	도	268	남해군		
50	"	"	"	산304	8	임	780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석기*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김기*	1/2
51	남해	상주	상주	산304	6	도	317	남해군		
52	"	"	"	1998	3	답	203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서종*	
53	"	"	"	1998	7	도	197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권평*	
54	"	"	"	1998	10	답	413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	민을*	
55	"	"	"	산302	14	임	59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권정*	
합 계							31,898			

남해군 공고 제2021 - 1211호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공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9. 6.

남 해 군 수

1. 공 고 명 :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공고

2.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주요 내용

가. 목 적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남해군 공공디자인 형성 및 관리를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나. 계획의 범위 : 남해군 행정구역 전체

다. 주요내용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표준디자인 개발
-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발굴 - 공공디자인 주민참여 등

3. 공람장소 및 열람기간

가. 장 소 : 남해군청 공공건축추진단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나.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다.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 따로 붙임

라. 관계도서는 공공건축추진단에 비치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공건축추진단 (☎ 055-860-3243, 공공건축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